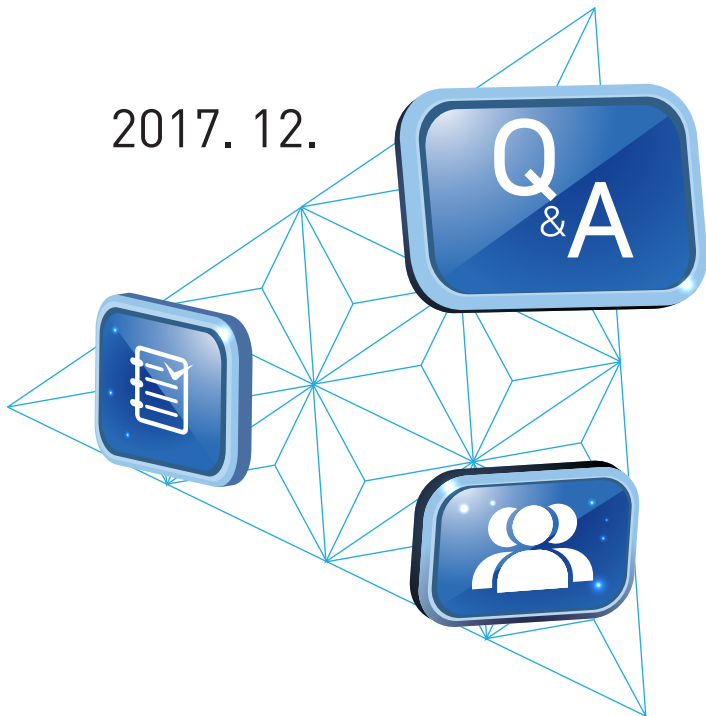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7. 12.



교육부

일·러·두·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일부 회신내용의 경우 특정 민원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이므로 타인이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 합니다.
-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 사례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처리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시는 시점에서는 부적정 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 O N T E N T S



I. 유아·특수교육

☑ 유아교육

1. 유치원 기간제교원의 가족수당 관련 3
2.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관련 3
3. 무상교육기간 36개월 초과자 원비 면제 가능 여부 4
4.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관련 6
5. 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비 관련 7
6.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관련 질의 8
7.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관련 9
8. “처음학교로” 회원가입의 건 10
9.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관련 11
10.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 11
11.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 관련 12

☑ 특수교육

12. 학령기가 지난 청각장애인의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질의 13

II. 초·중등교육

☑ 학생복지

1. 고교 무상교육 시행 여부 17
2. 청소년 화장 금지 요청 17
3.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급 관련 18

4. 학교 내 체벌 금지 제안	19
5. 검정고시 공고일 및 시험일 조정 건의	20
6. 학교 유형 관련 문의	20
7. 초·중·고 학생들의 실내화 관련 건의	21
8. 선도위원회의 전학처분 결정 여부	21
9. 학생인권보호와 생활지도 관련 문의	22
10. 검정고시 및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23
11. 학생 두발규제 제한 금지 요청 관련	24
12.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24
13.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관련	25
14. 국내 교복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 현황	26
15. 북한이탈가정(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관련	26
16. 교복 위 외투착용 관련	27

☒ **학생건강**

17. 급식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기간	28
18. 감염병 학생의 출결처리 관련 문의	29
19. 학교급식용 가공품 제조업자의 건강검진 기한	29
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30
21. 성교육 표준안 관련	32
22.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 질의	33
23. 응급구조사 자격 조건 관련	33
2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판매점	34
25. 교육환경평가서 관련 문의	35
26.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의무화 요청	36
27.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37

C O N T E N T S



2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물시설	37
29. 학교급식 납품관련 질의	38
3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련	39
31. 「학교보건법」 응급처리교육 관련	40
32. 학교급식 냉동식품 검수 관련	41
33.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관련	42
34. 보건교사 직무 관련	43
35. 진료확인서 기재 사항 관련	44
36. 영양교사 제도 운영 관련	45
37.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용역 진행 문의	45
3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용품판매점	46
39. 교육환경평가 대상 관련	47
40. 학생 입학 및 교원 채용 시 예방접종 관련 문의	47
41. 대규모 건축물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48
42. 학교급식 관련	49
4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PC방 설치 관련	51
44. 중학교 상대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관련	51
45. 교육환경평가 대상과 주차장	52
46. 교육환경평가 항목과 소음	53
47.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운영 관련	54
48. 자살예방 뉴스레터 관련	55
49. 현실적인 성교육 관련	56
50. 학교급식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관련	56
51. 학교급식이 의무인지 여부	57
52. 교육환경평가와 주택사업 승인	58
53. 대학원의 보건실 설치 관련	59

54. 교사 내 소음측정 방법 관련	59
55. 식품알레르기 표시제 근거 문의	60

☑ 학교생활

5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62
57. 학교폭력과 장애인 인권 보장	62
58. 학교 내 복도 CCTV 설치 관련	63

☑ 방과후 학교

59. 야간자율학습 문제	64
60.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 운영 관련	65

☑ 학교제도

61. 국립초등학교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관련	66
62.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67
63. 사립학교 직원의 임용	68
64.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68
65. 미국검정고시(GED) 학력인정 여부 질의	69
66.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대한 질의	70
67. 입학유예 아동의 입학 건	71
68. 초등학교 입학 관련	71
69. 고입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문의	72
70.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문의	73
71. 초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	74
7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해석	75
73. “학교” 명칭 사용 관련	76

C O N T E N T S



74. 초·중·고 입학 및 진학 관련 문의	77
75. 다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관련	78

☑ 교원 정책

76.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관련 문의	79
77. 교원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80
78. 교원이 난임진단과 질병휴직	81
79. 질병휴직 중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82
80. 연구학교 가산점 축소 관련	83
81. 학기 중 공무 외 해외여행	83
82. 육아휴직 가능 여부	84
83. 교원의 겸직 관련 문의	85
84.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86
85. 교사다면평가 제도 관련	86
86.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87
87. 부부교원의 육아휴직 관련	88
88. 중등임용 표시과목 관련	89
8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관련	90
90. 전일제강사 예비군훈련 관련	90
91. 산학겸임교사 정년 관련	91
92. 타시·도 교환교사 근무성적 평정 문의	92
93. 교원 연가 관련 질의	93
94. 임용고시 결격사유 관련 문의	94
95. 교원의 병가일수 산정 관련	95
96. 사립학교장 명예퇴직 신청 요건 관련	96
97. 교원임용고시 답안 공개 관련	96

98. 기간제교원의 고용안정 관련	97
99. 산학겸임교사 자격 관련	98
100. 기간제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99
101. 스승의 날 폐지 건의	100
102.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100
103. 교육공무원 타 시·도 전출 관련	101
104.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관련	102
105. 현직교원의 타시·도 임용 관련	103
106. 외국 국적인자의 기간제교사 가능 여부	104
107.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105
108. 사립학교교원 채용 관련	106
109.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관련	107
110.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율	108
111. 장애인교원 현황	108
112. 교원 성비위 관련	109
113. 중등임용시험 체육 가산점 관련	109
114. 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관련	110
115. 교원임용시험 결격 사유 관련	111

☑ 교원 자격·복지

116. 교원자격과 의무복무	112
117. 교원성과평가 관련	113
118.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114
119. 사학연금 관련 문의	115
120. 임용 전 대학원 경력과 보수 관련 문의	116
121.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경력 환산	117

C O N T E N T S



122. 공통과학과 통합과학 표시과목 관련	118
123.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관련	118
12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기	119
125. 초임 호봉획정 관련	120
126.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관련	121
127.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관련	121
128. 교육봉사활동 실적 확인 관련	122
129. 교직수당 가산금 관련(1)	123
130. 교직수당 가산금 관련(2)	124
13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24
132.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126
13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관련	127
134. 영양교사 자격 취득 관련	128
135. 육아휴직부터 3년 경력인정 여부	129
136. 기본이수과목 일치 여부	129
13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근무경력과 호봉	130
138. 중등학교 교원자격 7호 관련	131
139.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 취득 관련	132
140.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무시험검정	133
141.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관련	134
142. 기본이수과목 관련	135
143. 교직과정 이수와 편입학	135

☑ 교육과정

144. 선행학습금지법 관련	136
145. 자유학기제의 수학교육 관련	137

146. 졸업예정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훈련 참가 관련	137
147. 어린이집의 인성교육 관련	138
148. 학교 교기육성 지원금 공개 관련	139
149.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운영 관련	140
150. 4차 산업혁명과 초·중등 교육과정	141
15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활동의 학생부 기재 가능 여부	142
152. 학적용어(입학, 전학)의 의미	143
153.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의 진술 방식	143
154. 초·중등학교의 학기의 개념	144
155. 출결 관련 문의사항	145
156.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145
157. 학교도서관 운영의 역사	146
158. 국가기술자격증 학생부 입력 관련	147
159.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 관련	148
160. 봉사활동의 학생부 입력 관련	148
161.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관련	149
162. 198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 인쇄 방식	150
163. 초등 교과서 한자표기 관련	151
164. 초·중등교육과정 용어 관련	152
165.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 관련	153
166.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련	153
167. 교과서 구입 관련	154
168. 해외 유학생의 전입 관련	155

C O N T E N T S



Ⅲ. 고등교육

☑ 학사·제도

1.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대학도서관 주소	159
2. 법학전문대학원 추가합격자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159
3. 여군 군휴학 신청 가능여부 문의	160
4. 군복무 중 학업병행 문의	161
5. 재외국민 학력인정 기준 관련	162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162
7.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163
8. 폴리텍대학 관련 문의	164
9.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165
10. 계약학과 교육훈련비 부담 적정성 여부	166
11. 대학 현장실습지원비 관련	167
12. 사립대학교 교직원 가족수당 중복지급 문의	168
13. 사립대학 소속직원의 임명권 관련	169
14. 서울시 내 여자대학 설립 요청	169
15. 사립대학 법인의 재산과 회계 계정 관련	170
16. 사립대학 교명변경 신청 관련 절차	171
17. 사립대학 설립자 변경 관련	171
18. 명예퇴직 수당 관련	172
19. 대학별 지역, 교지면적, 국가장학금 내역	173
20.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173
21. 교육용기본재산 사용료 청구 관련	174
22. 사립학교 교직원 겸직 관련 질의	175

23. 교지확보율 관련 질의	176
2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관련	176

☑ 인사·복무

25.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177
26. 사립대학 교원 승진규정 개정에 관한 질의	178
27. '대학' 명칭사용 관련	178
28. 국립대 교수의 신분 관련	180
29. 국립대 교수의 기업회장 겸직가능 여부	181
30. 교육공무원의 간병휴직 요건 및 구비서류 질의	182
31. 행정사 자격 면제대상 관련	183
32. 국립대 교직원 연봉제 관련	183
33. 국립대 교원 징계시효 기산일 관련 질의	184
34. 국립대 조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의	186
35.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	186
36.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8
37. 사립대 조교 정규직화 요구	189
38. 사립대학 교원의 표절 저술과 교수 임용	190
39. 사립대 교원의 기업 대표이사직 겸직 관련	190
40. ○○대학교 헬스장 이용 관련	192
41. ○○대 스포츠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	193
42. 지방공무원 계약직 경력환산 관련	194
43. 교육공무원 조교로 임명 경력사항 문의	195
44. 교육공무원 초임호봉 확정 관련 질의	196

C O N T E N T S



☑ 대입제도

45. 윤리과목 수능 필수과목 건의	197
46. 야간 대학 입학 문의	198
47. 대학입학 취소 처분 근거	199
48. 대입정보포털 관련 문의	199
49. 입학사정관 보수 지급 관련	200
50.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201
51. 기초수급자 대입전형료 면제 관련 문의	202
52. 세월호 침몰 관련 생존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	203
53. 아포스티유 서류제출 관련	204
54. 수시모집 대학의 복수지원 허용범위	205
55.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기준	205

IV. 교육안전정보

☑ 학생안전

1. 아동 안전교육 관련	209
2.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관련	210
3. 미세먼지 관련 기준 및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	210
4. 학교 안전점검 관련	211
5. 미세먼지 관련 기준 및 인식제고	212
6. 오존주의보 발령 관련	214
7.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 관련	214
8.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연혁	215

☑ 교육정보

9. 사이버대학원 중복학적 관련	216
10. EBSi 수능방송교재 가격 관련 문의	217
11.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 관련	218
12. 증명서 발급 및 수신 관련	218
13.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관련	219

☑ 교육시설

14. 국립대 기자재 구입 관련	220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범위	221
16. ○○대학 학교 기숙사 관련	222
17. 학교시설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에 관한 질의	223
18. 기숙사 입사요건 관련	224
19. 교실 출입문 유효폭에 대한 벌칙규정 여부	224
20. 내진성능구역의 책임기술자 자격 관련	225
21. 재해취약시설 점검 관련	226
22.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증축 시 지자체 승인 여부	227
23. ○○대 도서관 냉방기 관련	228
24. 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관련	228
25. 사립대학교 민자사업 관련 절차 문의	229
26. 시설안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230
27. 학교시설사업 시행 관련	231

C O N T E N T S



V. 평생교육

☑ 평생교육

1. 평생교육원 이중등록 관련	235
2. 유아대상 과외교습의 불법성 여부	235
3.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	236
4. 독서실 성인 교습 관련	237
5. 재직자특별전형 관련	238
6. K-MOOC와 평행학습계좌	239
7. 학원강사 자격 문의	239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권해석 요청	240
9. 독학사 시험 및 학위제 관련	241
10.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242
11. 성인 대상 교육기관 자격 문의	243
12. 대학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학원법 위반 여부	244
13. 학점은행제와 공공기관 고졸 채용	245
14. 법정공휴일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여부	246
1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247
16. 정보교육을 위한 학원 인허가 관련	248
17. 평생교육 정책 관련 문의	249
18. 치료교육으로 학원설립 가능 여부	250

☑ 직업교육

19.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	251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와 구제 방법	252

21. 현장실습 시의 '휴일'에 대한 개념	253
22. NCS학습모듈 저작물 관련	254
23. 진로체험처 관련 문의	254

VI. 지방교육

☑ 교육재정

1. 학교설립에 관한 중앙투자심사 승인 요청	259
2. 학교용지 및 학교 시설 기부채납 시 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260
3. 학교용지법 용어 해석 질의	260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1)	261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2)	263
6. 교육용 시설 해당 여부	264
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265
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대상 관련	266

☑ 교육자치

9. 교원과 행정직원 관련	267
10. 시보임용의 기간 단축 해당 여부	267

C O N T E N T S



VII. 기타

1. 나이스 개인번호 변경으로 연수 결과 재전송 요청	271
2. 호봉획정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여부	271
3. 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명단, 주소록 요청	272
4.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273
5.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운영 관련	274
6. 유학생 거주 형태 통계 요청	274
7. 국제어학원 수업 운영 관련	275
8.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276
9. 교육부 인가 외국교육기관 목록	276
10. 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277
11. 간행도서 지원 요청	278
12.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 요청	278
13. 조선시대 호포제 및 고려시대 한외과 제도 관련	279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외 응시 요청	280
15.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 관련	281
16.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제출 서류 관련	282
17. 국비유학생 선발요건 문의	283
18. 외국대학 석·박사 과정 장학금	284
19. WEST 프로그램 선발 관련 문의	285
20.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286
21. 징계 절차 관련	287
22. 청탁금지법 상 스승의 날 허용 가능한 금품 등에 대한 질의	288

VI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291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303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320



I

유아·특수교육



■ 유아교육

1 유치원 기간제교원의 가족수당 관련

질 의

유치원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했는데, 가족수당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치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1년간 가족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6-11-22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기간제교원의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가족수당의 소급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해서 소멸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난해 근무하신 기간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도 확인을 한 사항이므로 해당 학교 행정실에 다시 가족수당 소급분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유치원 설립 신청 절차 관련

질 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학교설립계획서와 제2조1항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설립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판정을 받아야만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요?

회신

2017-01-10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제1,2항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 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학교설립계획서 등의 제출)에 따르면 학교의 종류, 목적, 명칭, 위치, 개교예정일 및 학생정원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학교설립계획서 승인판단 시 학교 위치가 학교보건법에 의한 교육환경평가에 적합한지를 검토합니다. 위와 같이 교육환경평가 적합 여부가 학교설립계획서 승인의 중요 검토사안임을 고려할 때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이전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청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그 순서나 전제 조건으로 정하는 부분 관련 명시적 제한이 없어 관할청의 재량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무상교육기간 36개월 초과자 원비 면제 가능 여부

질의

2014년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유아가 취원하여 3년 무상교육비 지원이 완료되어 올해부터는 교육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기입학자 1명을 제외하고는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어 수익자부담경비가 전혀 없고, 면 지역 병설유치원이라 원아수도 적어 수익자부담경비 없이 표준학교운영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누리과정비 지원에서는 제외되나,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되므로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재 별도의 수익자부담경비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1인당 경비를 산출해서 별도의 교육비 납부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내부기안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2017-03-21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해당기간 중에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단, 무상교육 기간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만 84개월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 가능

그리고 취학 직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비용 지원은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원아 1인당 지원 단가에 의하되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과 같이 다른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 비용 지원으로 별도 수납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무상교육 지원 비용 만큼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령 및 지침,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 부여 및 예외적 유예 허용, 다른 아동들과의 형평성, 무상교육 지원 비용과 양육수당의 중복지원을 불인정하는 등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제외한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해서 명시적인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지원 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한다면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유아학비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부담금의 일부를 지원 가능한지요? 선행조건이 있는지요?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1항4호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경우 범위 및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회신

2017-04-12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문언대로 해석하여 제1~4호의 경비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어떤 지원도 할 수 없느냐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위 법령 조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육성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문을 둔 취지에 반해 정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비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물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해석은 「광주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장이 그 지원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을 마련한다거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이 있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유아학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법령 조문에 따라 학부모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가 법령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비 관련

질 의

2012년생과 2013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로 이사를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동안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는데 해외에 오면서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해외에서 90일 초과 거주 시 보육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외에 있어도 국적이 한국국적이고 회사 일 때문에 해외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던 아이행복카드도 그대로 있고, 해외에서도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양육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7.1.6일자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이 개정되어 해외 체류 공무원의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공무원의 경우 유치원 학비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해외 체류 영유아의 양육비를 한국과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며, 최소한 학비보조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5-26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만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직전 아동 중 유아교육기관(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학하는 원아에 대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인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외 장기 체류 유아의 경우 기준을 정해 해당 서비스의 자격을 중지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께서 체류 중인 지역에 한국학교(한국어·한국사·한국문화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교육기관 포함)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4조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로 지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관련 질의

질의

남편(설립자), 아내(원장)가 같이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진행, 법원 판결 내용 중 유치원 설립자 변경을 통한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1)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신청”의 적합한 변경사유가 되는지요? (2) 설립자 변경 인가가 처리될 경우, 이는 재산 분할에 따른 유치원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인가권도 동일하게 승계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

2017-08-07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제2조가 2인 이상의 사립유치원 공동 설치·경영을 허용하고 있고 재산분할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매도나 담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산분할 명령(설립·경영자 변경 신청 전제)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변경인가 신청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기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인가가 단순 설립·경영자 지위 승계 관련 수리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공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이므로 ‘재산분할의 양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시설·설비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변경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할청이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학급 수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운영규모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할청의 학급수 조정 및 설립·경영자 변경인가 절차를 거쳤다면 변경된 유치원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 관련

질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맞벌이가정 엄마입니다. 본 유치원은 학부모 동의 없는 집단 휴업(9월18일, 9월25~29일) 참가 예정으로 인해 아이의 학습권을 침해하려 합니다. 또한 본 유치원의 휴업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아이의 보육을 맡길 환경이 되지 않아 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유치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침해하려는 것에 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본 유치원을 포함한 사립유치원들의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집단 불법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보다 더 투명한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다시는 일방적인 휴업 예고로 맞벌이가정의 학부모들을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회 신

2017-09-13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우선 사립유치원의 휴업 소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불안함과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임시휴업은 「유아교육법」 상 휴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 행위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아와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정상적인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측의 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처음학교로” 회원가입의 건****질 의**

유치원 입학에 위한 ‘처음학교로’ 시스템의 회원가입은 휴대폰 인증으로만 가능한지요?

회 신

2017-10-23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휴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9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 관련

질 의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33년 되었는데요 유치원 원장이나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10-30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현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초등교사 교육경력 33년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교육경력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법」 별표2에 기준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유치원 원장 자격은 원장으로 근무하시고자 하는 유치원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 원장 임용 관련 계획에 따라 진행되므로 선생님께서 근무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

질 의

무상교육과 상관없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한 유치원 입학 가능 연령이 궁금합니다.

회 신

2017-11-17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해 조기입학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 관련

질 의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최근에 병설유치원에 임용되었는데, 교육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회 신

2016-09-01(행복한교육) [유아교육정책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라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가지고 보육교사로서 전임한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경력 관련(「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 특수교육

12

학령기가 지난 청각장애인의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질의

질의

학령기가 지난 청각장애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구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학령기가 지난 청각장애인이 방송통신고등학교나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에도 수화통역 등 필요한 교육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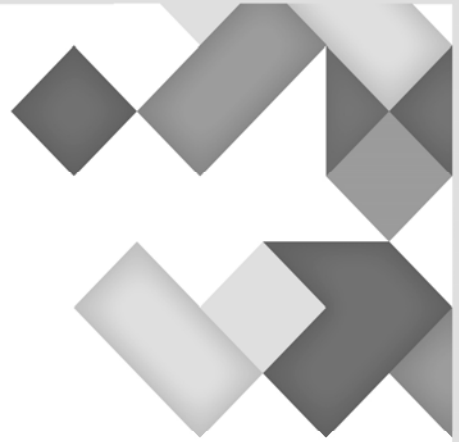
회신

2017-01-25 [지방교육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유치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교육기회(평생교육 포함) 제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청각장애인이 방송통신고등학교나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수화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Ⅱ

초·중등교육



■ 학생복지

1 고교 무상교육 시행 여부

질 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6-12-0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지난 '17.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2년 완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는 향후 관계기관 및 사회 각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청소년 화장 금지 요청

질 의

요즘에는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너무나 쉽게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고 화장한 아이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에게 화장 금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 신

2017-01-0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활지도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된 단위 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급 관련

질 의

저는 한부모가족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있는 엄마입니다. 한부모 교육비 지원 혜택이 있어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한부모가정 자녀학비가 학교에서 지원된다고 하네요. 아이가 학교에서 한부모가정으로 노출된 경험이 있어, 고등학교 학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회 신

2017-02-0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귀하께서는 한부모가정 고교 학비 지원 시 학교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학부모가 직접 학비를 지급받아 학교로 납부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일견 타당하며 사실 과거에는 교육급여 등 여러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이 제안해주신 것처럼 학부모님께 학비를 직접 지급하였으나, 지급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학교로 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노출 없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처리 지침을 안내하고 있으며, 담당자 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 노출을 최소화하고 교육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 내 체벌 금지 제안

질의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여 주시고,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제안합니다.

회신

2017-02-0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우리 부는 체벌, 언어폭력, 강압적 태도 등 비교육적인 훈육·훈계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학생 간 쌍방향으로 소통·공감하는 학교 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11.3.18)*을 통해 체벌 금지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했던 종전 법령을 개정하여 신체적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실정에 맞게 제정된 학칙에 따라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징계나 징계 외의 지도방법에 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지도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검정고시 공고일 및 시험일 조정 건의

질의

검정고시 시행일을 현행 4월, 8월에서 4월, 9월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3-2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검정고시의 공고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속 ‘검정고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귀하의 의견이 시도 ‘검정고시위원회’ 협의 시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학교 유형 관련 문의

질의

○○ 소재 ○○○○○학교가 그 성격이 일반학교인지 대안학교인지 아니면 국제학교(외국인학교)인지 법적인 학교 유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7-04-0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소재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3의 ‘대안학교’에 해당되며, 아울러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 중 5호 ‘각종학교’에 해당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7

초·중·고 학생들의 실내화 관련 건의

질의

청결이나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실내화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회신

2017-05-1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 내 실내화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기재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정 및 개정된 단위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선도위원회의 전학처분 결정 여부

질의

선도위원회는 퇴학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학처분은 못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2017-05-2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는 학교의 장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가 있을 때 학생을 지도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징계의 종류(1. 학교 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종류 중 전학처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법령 등은 별도로 없으며, 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조항에 따라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학생인권보호와 생활지도 관련 문의

질의

학생을 제재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건전한 수업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학생들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에 학생인권보호와 교권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회신

2017-06-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현재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생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나 징계 외의 지도방법에 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생 인권에 대한 강조가 교권 침해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부는 앞으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10

검정고시 및 평생학습계좌제 관련

질의

공무원이 검정고시 응시 시, 과목면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7-1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1) 검정고시는 정규학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학력취득과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보충적 성격의 학력 인정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출제 내용, 출제 수준 등이 다른 공무원임용시험 합격자의 검정고시 과목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2) 평생학습계좌제의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계좌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받는 절차)을 신청해야 합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온·오프라인 학습과정 개설 후, 평가인정을 신청하게 되며,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제 검정고시 면제과정의 운영이나 온라인제공 등은 개별 평생교육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검정고시 면제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교과목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면제과목에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교과가 제외되는 것은 평생학습계좌제 연계제도가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결과를 인정하여 전 과목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학생 두발규제 제한 금지 요청 관련

질 의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두발규제를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 신

2017-08-0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이에 대한 생활지도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된 단위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두발 자유화’를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단위학교가 합리적으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생 생활규정 길라잡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등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권역별 교육청 핵심 관계자 연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식개선 및 연수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질 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7-09-0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유치원’을 통해 다문화 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기초학습을 조력하는 ‘대학생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외국인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지원하는 ‘예비학교(한국어 특별학급)’를 운영하고, 다문화 학생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대학 기반으로 수과학, 예체능 등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글로벌브릿지 사업’ 등도 운영합니다. 위와 같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 외에 학교현장을 다문화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교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 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현장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3

중·고등학교 여학생 교복 관련

질의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교복에 스타킹보다 니삭스를 착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혼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회신

2017-09-1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교복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단위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4

국내 교복제도의 법적 근거 및 운영 현황

질의

얼마 뒤 학교에서 교복규제 관련 토론회를 합니다. 이때 근거로 제시할 교복제도가 없거나, 교복과 사복(자율복)을 혼용해서 입는 게 가능한 학교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10-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교복 착용 여부, 교복과 사복 혼용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한 교복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에서 조사한 동복 착용 학교 비율은 '17.3.2 기준 95.1%(5,289개교/5,559개교)이며, 하복 착용 학교 비율은 '17.5.16.기준 93%(5,220개교/5,585개교)입니다.

15

북한이탈가정(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관련

질의

탈북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10-18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우리 부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의 적응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답임

· 교과교사 1:1 멘토링, 전문심리상담사 등을 통한 상담·진로 교육 등과 같은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국 초기 단계에서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및 남한 학교생활 안내’, ‘남한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역할 안내’ 등의 내용으로 탈북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착지 학교(일반학교)의 탈북학생 학부모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16

교복 위 외투착용 관련

질의

교복 위 외투착용을 규제하는 학교규칙을 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신

2017-11-0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복지정책과]

현재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따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단위학교의 학칙에 근거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 부는 학교규칙(겉옷규제) 시정 촉구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학교규칙 개선 요청을 공문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41, '16.1월) 있으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 학교규칙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학생건강

17 급식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기간

질 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 식재료 업체의 배송요원 및 종사자는 6개월에 1회(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6개월에 1회(연 2회)는 문구의 의미가 2016년 1월 1일(판정일)을 기준으로 2016년 7월 1일 이전이 다음 판정일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2016년 7월 25일도 연2회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6-12-1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건강진단 결과가 나오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진단 기준일 : 2016년 이전에는 ‘검진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급식종사자의 식품취급 안전성 확인을 위해 ‘판정일’로 변경, 따라서 1월 1일 건강검진 판정을 받으셨다면 7월 1일 이전에 다음 건강검진 판정을 받으셔야 하며, 건강검진 판정이 1주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시어 검진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18

감염병 학생의 출결처리 관련 문의

질의

중학교 3학년인 저의 딸이 새벽에 심한 발열로 인하여 학교선생님의 허락하에 병원 진료를 하고 09:20분에 등교함에 따라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발생과 예방을 위해 취한 병원 진료 및 처방으로 발생한 지각(1회)에 대하여 2016년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 관리를 위하여, 독감 의증하에 심도 있는 치료를 한 경우 첨부 진료확인서로 출석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7-01-0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14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에 따라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매뉴얼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매뉴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로 인한 결석 또는 등교 중지 학생이 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결상황을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

학교급식용 가공품 제조업자의 건강검진 기한

질의

학교급식 시 식품 취급자나 조리작업자는 6개월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가공품(식재료)을 제조하는 업체 종사자도 6개월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나요?

회신

2017-02-1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의 준수사항보다 한층 강화된 위생관리기준을 학교급식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와 식재료 업체의 배송요원에 한하여 6개월에 1회 실시(X-ray를 찍는 폐결핵검사는 연 1회 실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

질의

기존의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던 교육환경보호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정됨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자는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환경평가를 학교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학교 주변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건축물 건축 시 교육환경평가를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심의를 받아야하는지? (주변이라고 하면 200미터 범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이라도 수인한도를 만족한다면 심의대상에서 제외가능한지?

다.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평가를 받았다면, 사업시행인가 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비계획수립 시 제출한 교육환경보호계획으로 갈음이 가능한지?

라. 정비계획 수립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이지만 수인한도를 만족해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곳이 법 개정 이후로 사업시행인가 시에는 수립을 해야 하는지?

회신

2017-03-0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등은 해당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부득이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 및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학교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교육감이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 준 경우에는 교육환경법 시행 이후 새로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환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 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

성교육 표준안 관련

질의

올해 배포 예정인 국가 성폭력 예방 표준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학생을 예비 범죄자로 여겨 ‘단둘이 있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게 하기보다 학생들에게 몰카와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서도 몰카 찍는 범죄를 저지르고 성매매를 한 범죄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범죄가 흔하니깐 해도 된다고 알기 전에 어릴 때 부터 인식을 바로잡아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표준안을 개정해주십시오.

회신

2017-03-1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우리 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 확립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초·중·고등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15.2월)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수정요청이 있어, 우리 부에서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교육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해 ‘학교 성교육 자료 보완 및 표준안 적용 실태분석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9~’16.9)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수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교육자료’의 수정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현안을 유지하고 ‘교육자료’는 연구 결과를 반영·수정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교육자료’와 관련된 것으로 성폭력 가·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의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

교육환경평가서 제출대상 질의

질의

2월 4일 이전에 구 학교보건법에 의해 공장설립 승인 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당 교육지원청의 승인행위(협의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인지요?

회신

2017-03-20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사항에 한정되는 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23

응급구조사 자격 조건 관련

질의

학교보건법 관련한 응급구조사 자격 조건에 왜 관련 분야 경력 5년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4-0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강사 자격 중 응급구조사와 관련된 자격 조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다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분야(응급 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 자격 외에도 실무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교 응급처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판매점

질 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전자담배판매점이 해당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04-0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제13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하고 있는 시설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이며, 이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및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에 해당하는 업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담배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물건으로써 이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전자담배판매점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25

교육환경평가서 관련 문의

질의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 교육환경평가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4-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학교보건법」 제5조·제6조·제6조의2·제6조의3·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교육환경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이 있었다면 새로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환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후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17호, '17.4.12. 시행) 제2조에 따라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6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의무화 요청

질의

우리나라 교육기관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회신

2017-04-1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1. 최근 우리나라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실 외기 창문을 이용한 환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통한 저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2. 현재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다만,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기 설치를 위한 효율성, 이에 따른 예산, 기기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사후관리 방안, 기기 가동에 따른 후속조치(기기가동 소음, 환기부족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 등과 관련한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선은 부득이하게 환기를 위한 보조설비 설치가 필요한 학교(또는 교실)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거효율 및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7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질의

'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학 당시 작성된 학생건강기록부에 몸무게와 키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재 이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령 및 조항이 궁금합니다. 만약, 졸업 후 당시 몸무게나 키로 인한 학생건강기록부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근거규정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7-04-2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완료된 건강기록부의 내용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80호)」 제17조에 따라 학교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학생건강기록부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때에는 출력물을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5년간만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바, 200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의 건강기록부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게임물시설

질의

최근 아는 지인이 노상에 인형뽑기 1대(게임물 등급받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를 설치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제공업이 아닌 경우에는 건물 내에만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법 위반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질의 요점은, 노상에 설치한

게임물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에도 해당되는지요?

회 신

2017-04-2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 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환경법」 제9조제2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 1개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 설치,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 등의 설치조건을 두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조치로 해당 게임물 시설에 대하여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지 않은 게임물 시설에 대해서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

학교급식 납품관련 질의

질 의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축산물 업체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회 신

2017-05-0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축산물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육의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없이 식육판매업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해 유통(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도서벽지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련

질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하기와 같은 법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령 학교환경정화구역 제도의 상대정화구역을 측정하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5-1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를 절대보호구역으로,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육환경법」 제9조제20호에 따라 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시설(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의 경우 당해 영업소의 부지(지번) 일부가 보호구역에 걸쳐 있더라도 게임물 시설이 설치된

위치(장소)가 보호구역 밖에 위치한다면 금지시설로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게임물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세부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게임기의 무게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환경법」 제9조를 위반하여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과태료 처분이 아닌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게임산업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 등의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해당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1

「학교보건법」 응급처치교육 관련

질 의

1. 학교보건법 응급처치교육 강사자격에서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된 자격이 민간단체 자격도 해당 되는지요? 해당된다면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되는지 각 민간단체의 강사자격이 있어야 되는지요?
2.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아니더라도 민간단체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사자격을 갖춘자는 보조강사를 할 수 있는 건지요?

회신

2017-05-1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는 학교의 장이 소속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중에서 강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중 간호사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국가자격은 없으며 모두 민간기관에서 발급하여 운영하는 자격이므로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을 취득한 간호사는 강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가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하여 강사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2

학교급식 냉동식품 검수 관련

질의

학교급식 냉동식품 검수 시 온도관리 기준과 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5-2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냉동식품의 검수 기준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냉동상태 유지’이나, 학교급식은 당일 입고하여 당일 조리하는 시스템으로 냉동상태로 납품받을 경우 당일 조리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에 따라 영양(교)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입니다. 냉동식품의 검수 기준은 ‘-18도시 이하’가 아닌 ‘냉동상태 유지’이며, ‘-18도시 이하로 납품이 어려워 해동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 (교)사의 해동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표시를 하고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납품이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33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시기 관련

질 의

교육환경평가서를 접수해야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접수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허가접수와 상관 없이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이면 아무 때나 접수하면
되는지요? 접수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회 신

2017-06-1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출시기가 아닌 제출기한을 정하는 것으로써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라면
건축허가 접수 후에도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은 가능하나,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해당 건축계획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바,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불승인 또는 권고사항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교육환경평가
진행 절차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

보건교사 직무 관련

질의

1.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지금 하위법(시행령)은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업무조정 시에 하위법 시행령의 직무에 따라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참고] <상위법> 학교보건법 제15조2항에 ② 모든 학교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 <하위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3항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법 15조에 의거하여 보건교사의 법적인 직무는 제9조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6-1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것을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속 교직원의 구성인력 및 관련업무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부에서는 「2017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통해 학교장은 환경위생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교직원 중에서 지역적 특성, 업무의 영역, 전문성 및 당해 학교의 업무형편에 따라 교사 내의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고, 소속 교직원

1인이 전담하지 않도록 가급적 복수 지정하도록 기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교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학생 건강관리에
있어 학교 교사 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그 간 사회적 변화 및 학교 환경위생 관리분야의 복잡·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35

진료확인서 기재 사항 관련

질 의

학생들을 진료하고 진료확인서를 떼주는데 보통 개인정보보호나 의사협회
지침대로 학생이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진료확인서에는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질병코드를 학교에서 요구한다는 학생들이
많아져 문의드립니다.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6-1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는 성장기 학생들이 단체활동을 하는 곳으로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에서는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서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해서는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는 학생의 ‘등교중지’ 여부와 ‘출결상황’ 관리 등을 위해 진료결과(질병명)의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36 영양교사 제도 운영 관련

질의

초·중등학교의 영양교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6-2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영양교사 제도는 기본적인 학교급식 관리 이외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영양·생활 교육을 통해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03년 7월에 도입되어 2006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37 학교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용역 진행 문의

질의

교육기관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공기질 연구를 진행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진행 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06-2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실내공기질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는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사 내 공기질 점검방법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한 연구로서 현재 관련 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연구용역의 범위 등 협의단계)단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한 연구 진행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연구와 관련한 세부 사항과 결과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인용품판매점

질 의

종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성인용품판매점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 후에는 성인용품판매점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성인용품판매점 설치가 가능한지요?

회 신

2017-06-2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있으며, 동 구역 내에서는 같은 법 제9조제13호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하는 업소를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여성가족부장관고시 제2013-51호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39

교육환경평가 대상 관련

질의

법률에서 언급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2017-07-0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구(舊)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가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습환경조사 및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해당 정비계획 등에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요구사항을 시장·군수 등에게 건의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 바 있으나, '17.2.4부로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 또는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가 강화된 바 있습니다.

40

학생 입학 및 교원 채용 시 예방접종 관련 문의

질의

학교 입학 시 또는 교원 채용 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07-0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검사하여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입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초·중학교의 교원 또는 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임용 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법률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합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41

대규모 건축물 교육환경평가 대상 여부

질의

본 사업지구는 당초 2007년 주택법에 따라 승인받은 지역(교육청 협의 : 학생수용계획 협의완료)으로 사정상 공사착공이 지연되다 금년 일부 변경(세대수 변경 없음, 동수 축소로 층수 변경 : 15층 → 21층 이상, 연면적 변경 : 7만6천㎡ → 6만7천㎡, 승인권자 변경 : 구청장 → 시장) 등을 통하여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주택법에 따른 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조에 의해 금회 변경계획이 대상기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본 사업지구의 경우 구법에 따라 2007년 당초 승인을 득한 사업이므로 교육환경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7-0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까지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17.2.4.)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21층 이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17.2.4. 이후 해당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현행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다시 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2

학교급식 관련

질의

저는 1978년생으로 1997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1985년 3월에서 1997년 2월까지의 학교급식이 없었습니다.

1. 따라서 1997년 3월 이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이 시작되었는데 몇 년도부터입니까?

2. 학교급식을 규정한 법령은 어느 법령이며 몇 조, 몇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3. 학교급식 때 전교생이 모두 같은 시간에 단체로 식사합니까?
4. 학교급식 때 학생들이 식사하는 식당의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는 학교급식이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은 세대여서 궁금합니다.

회신

2017-07-2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우리나라 학교급식 제도는 1953년 한국전쟁 후 결식아동에 대한 UNICEF 등 외국원조기관의 지원으로 구호급식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1973년 원조기관의 지원중단으로 자립급식으로 전환, 1978년부터 학교 자체조리 급식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1992년부터 학교급식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1998년까지 초등학교 전면 급식을 실시하였고, 학업부담이 많은 고등학교 급식확대를 우선 추진하여 1999년까지 완료, 중학교는 2002년까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령 이외에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당면적은 학교별로 학교 부지, 학생수, 재정여건 등의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학교급식법령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축 및 증개축단계에서 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식당시설을 설치하고 학년별 순서 등을 정하여 식사를 실시하는 등 질서 있는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식당 면적 산출 시에는 【급식인원수/{좌석회전을 (1.7~2.5회전)×1인당 바닥면적(1.2㎡)}】을 고려하고 있음

43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PC방 설치 관련

질의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PC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번부지(복합건축물이 아님, 붙임 건축물대장 참조) 경계까지의 거리는 197미터이고, PC방 신청건물 자체는 200미터를 벗어나 있으나, 동 건물의 주차장(공유시설)이 보호구역 내에 해당될 경우 그 거리 기준(심의대상 여부)을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신

2017-07-2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집합건물 내 PC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포함되지 아니하나 해당 부지의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경우, 동 PC방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된 부지(공용공간)가 법령상 해당 시설의 등록 또는 해당 시설의 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

중학교 상대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관련

질의

140m 정도에 00중학교가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상대 정화구역이겠쥬, 당구장이 스포츠 시설로 바뀐지도 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당구장 창업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7-07-2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며, 동 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법」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구장업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21호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하며,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구장업을 상대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청에 두고 있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지역위원회 심의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추가 문의 바랍니다.

45

교육환경평가 대상과 주차장

질의

사업대상지는 1970년도에 최초 결정된 약 50만 제곱미터의 유원지로서 사업대상지 주변에 2006년 최초 결정된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회 건축허가를 변경하고자 함에 있어 사업대상지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녹지 및 도로로 이용될 예정이고 주변이 지상주차장으로 계획될 예정이라 일조에 영향도 없는 상황인데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받아야 한다면 어떤 평가 항목들을 제외할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7-08-0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21층 또는 연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녹지 및 도로 등 기반시설만 예정일 뿐 해당규모의 건축행위가 없다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6

교육환경평가 항목과 소음

질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중 교사 내 소음도 기준이 55dB로 규정되어 있는데, 창을 열어둔 상태에서 55dB를 만족해야 한다면 - 기존 건축되어진 교육시설 (도로를 접하는 부지의) 중 교사 내 소음도 55dB를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시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허가가 난 배경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7-08-0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 및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별표1(교육환경평가 항목별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에서는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평가 대상항목 중 소음·진동의 경우 교지 내 소음은 「환경

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교지 내 소음의 경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소음·진동 유발원 분포, 소음·진동 현황 측정결과, 소음·진동 영향예측 결과를 도면 및 도표로 정리하되, 소음진동 기준 초과 시에는 저감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 내 소음의 경우 외부소음과 교사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상태를 모두 고려하여 학생 등이 없는 교실 안에서 측정하되,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저감 마련 대책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중창 또는 냉·난방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조치 방안을 수립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7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 운영 관련

질 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재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 거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8-0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부터 제29조까지 규정된 행위 및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께서 질의하신 반복된 지역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한 거부 등 제한규정은 교육환경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거부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판례(2006누413, 2006두15806)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자살예방 뉴스레터 관련

질의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거의 매월 자살예방 뉴스레터를 아이들 편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충실하여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받아볼 때마다 자살예방이라는 섬뜩한 단어 때문에 눈에 거슬립니다.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확실히 읽을 수 있으나 아이들의 손을 거쳐 전해지는 가정통신문에 아이들을 잠재적 자살자로 규정하는 듯한 이러한 용어를 굳이 써야 하는지 의아합니다.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은 자살예방이라는 단어를 써서가 아니라 교육환경과 마음이 통하는 교육과 뉴스레터가 바라는 대로 따뜻한 가정환경을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담당선생님도 이 의견에 공감하여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고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도 공감하셔서 도내에서는 지양하기로 했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아 민원을 올려봅니다.

회신

2017-08-3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 자살률 감소는 따뜻한 가정환경을 통해 가능하다는 학부모님의 말씀에 백분 공감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등 자료에 ‘자살예방’보다는 ‘생명존중’ 용어의 사용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초등학생용 학생자살예방 자녀사랑하기 뉴스레터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9

현실적인 성교육 관련

질 의

얼마 전에 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검사가 끝난 임신 테스트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초·중·고 학생들의 성교육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9-04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우리 부에서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태도 확립,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 의식의 함양, 성범죄 예방 등을 목표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성욕구 조절, 책임 있는 성행동, 임신, 출산, 양육, 감염병 등 현실적인 성교육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0

학교급식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 관련

질 의

교육부의 “학교급식위생관리 지침서(4차 개정)” 30쪽 복장에서 영양(교)사는 조리장 내에서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며, 외부 또는 화장실 출입 시에는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25)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의 조리장 개념에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조리장 개념에도 영양(교)사의 업무공간인 급식관리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양(교)사가 조리장 또는 식재료

보관실 등을 출입 시에는 당연히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사무업무를 위해 영양(교)사가 급식관리실에 상주할 시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7-09-05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제4차 개정판('16.1월)에 따라 조리장 내에서는 학교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뿐만 아니라 방문객까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리장은 학교급식을 위한 접수실, 창고, 전처리실, 조리실, 세척실 등 모든 조리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나 조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양사실 등에서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1**학교급식이 의무인지 여부****질 의**

고등학생 급식은 의무인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급식 자체는 의무이지만 학생들에게 선택 권한을 줘야 하는 것인지, 의무적으로 먹으라고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여 문의합니다. 의무이든 선택이든 지침 또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9-1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급식 실시여부는 강제 또는 의무가 아닌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단위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학교와 상의하여 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교급식이 학생 건강증진,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학부모의 도시락준비 부담해소 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2

교육환경평가와 주택사업 승인

질의

주택법에 의해 신청한 주택사업승인과 관련하여, 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법) 내에서 사업규모가 지상 20층, 사업연면적 99,129㎡인 경우 해당 교육청협의 사항 중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보호법」을 적용하여 일조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10-2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교육환경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규모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3

대학원의 보건실 설치 관련

질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대학원도 보건실을 설치하고 의료인을 배치해야 하는 건가요?

회신

2017-10-27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은 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므로 설립자·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 담당을 목적으로 배치토록 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54

교사 내 소음측정 방법 관련

질의

소음분야에서 유지관리기준으로 교사 내 소음기준을 55dB(A)로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소음측정을 1곳 이상에서 클래스2 이상의 소음계로 교실창 1m 이격 거리와 복도 1m 이격 거리 두 곳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평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균은 한 교실 내 2지점(복도측, 창측)에 대한 산술평균 인가요? 또한, 교사 내 소음측정 시 창문 개폐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11-1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사 내 소음을 55dB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그 측정방법 등은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고시)과 매뉴얼을 통해 일선학교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매뉴얼에서는 외부소음 및 교내 소음 영향을 고려한 소음환경조사를 통해 소음의 영향이 큰 교실을 선택하며, 교실 창으로부터 1m, 복도로부터 1m 떨어진 지점 2곳을 5분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으로써 각 측정교실별 측정값의 평균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기준은 상시 관리되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써, 창문개폐 등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며, 교실 내·외부 소음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음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방법(창문개폐 등)으로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5

식품알레르기 표시제 근거 문의

질 의

〈학교급식의 식품알레르기 표시 예〉-기장밥-김치떡국5.6.9.13.17.18.-참나물무침-깎풍기5.6.13.15.-백김치9.13.17.18.-우유2. 관련 정보에 대해서 식약청에 문의한 결과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식별번호로 표시하는 경우 각 식별 번호별 해당하는 식재료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각 번호가 의미하는 식재료가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없으며, 급식식단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면 교육부의 확인 및 가이드를 받도록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여러 학교의 급식식단을 샘플링해 조사해본 결과 모든 학교가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밀 7.고등어 8.게 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의 순서대로 식품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서가 특정 가이드에 의거한 표시인지, 각급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11-1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생건강정책과]

우리 부에서는 2012년부터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16조에 따라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단표에 표시하여 가정통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 식당 및 교실에 게시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 상 다양한 식재료가 사용되므로 모든 학교에서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명을 모두 기재할 경우 너무 복잡하여 학교에서 표시하기 어렵고,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알레르기 유발식품에 차례대로 숫자를 부여하여 식단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동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학기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업무의 효율화 및 교원업무 경감 등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의 급식시스템을 통해 식단작성 및 식단표 작성 등의 학교급식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생활

56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질 의

학교폭력 가해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학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회 신

2017-05-26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작성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제1절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를 따릅니다.

57

학교폭력과 장애인 인권 보장

질 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와 학교폭력 재심 단에 있어서 장애인에 관련된 분이 없으시 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재심 단이 알아서 처분을 내려 줄 것’이라는 안일한 안타까운 행정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음에 마음이 저며 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어느 곳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와 학교폭력 재심에 있어 장애인에 관련된 사건은 반드시 장애인과 관련된 분이 참석하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5-31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우리 부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시 다음 사항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58)」에 제시하여 공정한 사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추가 고려사항으로 전담기구 및 자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를 조치할 때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재심 시, 장애인 관련 사건은 장애인과 관련된 분이 참석하여 조치사항을 내릴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8

학교 내 복도 CCTV 설치 관련

질의

1. 교사 내 복도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2. 초등학교 교사 내 복도에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근거를 들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06-23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학교생활문화과]

1.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에서 ‘공개된 장소’는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 즉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위의 정의에 따라 복도는 특정인만 출입하는 곳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 가능하므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16.12)」에 근거하여 학교 상황에 따라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운영되는 장소는 ‘비공개된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2. 우리 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CCTV의 구체적인 설치·운영은 학교 보안담당자와 CCTV 전문가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우리 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의 제5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에 따라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동 가이드라인」 제8조(사전의견수렴)에 따라 학교의 장은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3) 그밖에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전 의견수렴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과후 학교

59

야간자율학습 문제

질 의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인가요?

회 신

2017-03-09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방과후학교지원과]

야간자율학습 실시 여부는 학교 자율로 학교장이 학교의 특성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여시키는 학교가 있다면 구체적인 학교명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알려 주어 방과후학교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0**교육기부 포털 사이트 운영 관련****질 의**

교육기부포털 사이트에서 1월 16일 시작된 이벤트(○○○○ 모바일 상품권 선착순 400명, <http://www.teachforkorea.go.kr>)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5-02 [학교정책실 학생복지정책관 방과후학교지원과]

교육기부포털 사이트(<http://www.teachforkorea.go.kr>) 체험 이벤트가 당초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당첨 결과 안내가 지연되었으며, 이벤트 종료 시점인 '17. 5. 2. 입력하신 핸드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 학교제도

61

국립초등학교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관련

질 의

국립초등학교 입학은 신청자들을 모아서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배려 계층이나 국가유공자 자녀는 유치원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배정이 권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국립초등학교의 입학생들 중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2016년 입학생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6-12-0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국립초등학교의 국가유공자녀의 특별입학 입학전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국의 17개 국립초등학교 중 11개 학교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발인원은 학교별 학생정원에 따라 1~3명까지로 상이합니다. 민원인께서 유선을 통하여 확인을 요청한 ○○○○○부설초등학교의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별전형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교에서 차년도 입학전형 결정 시 특별전형의 신설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는 학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62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질의

생일이 빠른 관계로(2017년 1월 18일이면 만 6세), 내년 3월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관련 동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이 조기입학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 학구 내의 초등학교에 직접 가서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고, 거주지학구 내의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조기입학을 신청하니, 외국인자녀에 대한 조기입학관련 시행령이나 정책이 아직 미흡하여, 조기입학 가능여부에 대해 줄곧 유관기관에 확인 중이라고만 하고 확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곧 연말인데 아직 딸의 초등학교 입학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회신

2016-12-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외국인인 아동은 보호자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통학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주소지를 통학구역으로 하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입니다. 따라서 조기입학 신청과 관련하여 민원인께서는 ○○○○초등학교에 입학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학교에 확인한 결과 학교에서는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입학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3

사립학교 직원의 임용

질 의

사립학교법 직원의 임용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1-12 22:12:0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임용이란 ‘어떤 일을 맡아 하도록 하기 위해 사람을 뽑아 쓰는 행위’를 지칭하며, 사립학교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될 수 있습니다.

64

사립학교 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질 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건물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법인이 직접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1-1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기본재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의 허용범위는 모든 교육용 기본재산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고 이들의 편의를 위한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46조에 따라 관할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65

미국검정고시(GED) 학력인정 여부 질의

질의

공군에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GED를 따고 한국에 왔는데 공군에 지원신청 할러니 중학교 졸업 이상만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드려요. GED도 한국의 검정고시 취급을 받고 공군 같은 곳에 지원할 수 있나요?

회신

2017-01-1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의 제1항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항 제1호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검정고시 합격자(GED)의 학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초등학교·공민학교 2.중학교·고등공민학교 3.고등 학교·고등 기술학교 4.특수학교 5.각종학교[전문개정 2012.3.21.]

1.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가 위의 법에 포함이 되나요?
2. 위 5항의 각종학교의 의미와 국내의 학교중 이에 해당되는 교육시설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2-2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국제학교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서 구분되는 학교의 종류 중 ‘각종학교’에 해당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각종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 기관을 의미하며, 정규학교와 비슷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3조·제88조

67 입학유예 아동의 입학 건

질의

취학 의무 유예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학년 결정 방법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3-1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8 초등학교 입학 관련

질의

초등학교 입학 가능한 나이에 관한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3-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은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은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에 따라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9

고입의 사회통합전형 관련 문의

질의

이번에 고입 전형에 응시하는데 사회통합전형 요건에 해당이 되나 소득 8분위를 넘어서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쉬운 것은 현재 저와 제 처의 건강보험료는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맞으나 저는 지난 몇 년 간 연금 외에 소득이 없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 프로젝트로 인해 계약직으로 취직이 된 상태이며 그 이전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또 그 이후에도 다시 소득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소득기준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저처럼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 계약직의 경우 예외 규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신

2017-06-0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사회통합전형은 고교 입학전형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로 선발하는 제도이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르면, 사회통합전형 지원자격 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법정 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은 기회균등전형(경제적 배려대상자)과 사회다양성전형(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기준 등은 시·도별 자체 계획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회통합전형 소득기준 산정 예외 적용 등과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탑재 문의

질의

제가 다니는 학교 ○○○ ○○○ Academy 가 한국 교육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한국대학에 입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 ○○○ Academy를 우리나라 교육부에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7-06-2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은 외국의 해당 지역 총영사관 등의 협조를 받아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은 민원인의 요청으로 해외 공관이 제공한 학력인정학교 목록을 교육부가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목록에 없는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에 목록 현행화를 요청하고, 이후 영사관은 확인 과정을 거쳐 최신화된 학교 목록을 교육부로 통보하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 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안내는 ‘귀국학생 행정서류 간소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력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시 기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거쳐 학력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이 해당 영사관에 목록 현행화를 요청하거나, ② 민원인이 직접 해당국의 정규교육 기관(학교)임을 소명 또는 ③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

특례입학의 경우 대학별로 특례입학 대상 학생이 정규학교에 재학했는지 여부를 자체 확인하고 있으므로 귀국학생 행정서류 간소화 방안은 대입에 적용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초등학교 입학 배정 관련

질의

국공립초등학교 배정 시 통학구역 이외 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7-06-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교육장은 다음해 취학할 아동의 통학구역을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읍·면·동의 장은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하며 취학통지는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로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취학아동 명부 작성 후 취학통지를 하게 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중간 생략)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인정하는 절차, 즉 누가(인가 신청자 또는 인가자), 언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세부 규정, 절차와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종학교(교육감 인가한 대안학교)에서 사립학교 특성화 중학교로 인가 신청하고자 하는데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절차없이 학교설립 인가신청이 가능할까요? 교육부장관의 인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신

2017-07-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5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중간 생략)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에 해당됩니다.

※ 제15조(각급학교의 인가기준 등) ②(생략) 학교설립계획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 영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확보한 경우 및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여 설립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종학교에서 중학교로 인가 신청하는 경우는 같은 법 단서조항 첫 번째 경우 (기존학교를 개편하여 다른 종류의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외 학교설립 인가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에 제출 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학교” 명칭 사용 관련

질 의

○○○ ○○, ○○○에서 “색소폰 학교”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방을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색소폰 레슨 영상’을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해서 올려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간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색소폰 악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이기에 이 방의 이름을 “색소폰 학교”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레슨 영상을 보신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아 경고하고 있어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 댓글 내용 : “색소폰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교육부에 인가된 학교인가 문의했더니 인가되지 않았군요. 그런데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교육법 위반으로 고발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즉시 모든 게시내용을 정정하지 않으면 교육법상 불법명칭 사용으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라는 명칭은 엄격한 설립절차와 교사자격을 갖춘 교사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주일 이내 정비가 되지 않을 시 교육법에 근거해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불미스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위의 경고성 댓글 내용과 관련하여 SNS에서 커뮤니티 방 이름에 학교라는 것을 사용함이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9-0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1호에서는 “동법 제4조2항(사립학교)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고등학교의 설립 경영자)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0조에서 각종학교는 제2조에 명시된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도3003)에서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민원인님께서 운영하는 밴드에 사용하는 학교라는 명칭은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로 오인될 우려가 없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학교’ 명칭 사용으로 보여지며, 관계법령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제재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관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진학 시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학교만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하고 있지 않네요. 초·중·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진학을 안하는 것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그런 것인가요? 무언가, 어딘가가 안

좋은? 그렇지 않다면 초·중·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진학하는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라서 그런가요? 초·중·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진학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09-0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취학시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 원칙의 가장 큰 이유가 되며, 아동은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에 따른 입학할 초등학교를 통지받거나,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해 입학할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추첨배정, 자기주도 학습전형, 선발시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배정)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및 대부분의 고교에서 실시 중인 추첨배정(무시험입학) 방식은 학생 간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1969년 중학교부터 도입(고등학교는 1974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결국, 초·중·고교의 무시험 입학은 의무교육 취지 달성, 사회적 문제 해소 등의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다자녀 중학교 우선 배정 관련****질의**

다자녀에 대한 실질적 혜택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 규정('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회신

2017-10-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2호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기존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에 대한 중학교 우선 배정이 전국 시도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령에 명문화한 것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중학교 우선 배정의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를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중학교 우선 배정 대상자 등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입학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인정방법, 입학 방법 및 절차 등을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자녀에 대한 중학교 배정을 18세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의 개정 또한 필요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사람의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과 관련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원 정책

76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관련 문의

질의

사립학교 행정실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본교 교원 중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6년 10월 13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이 항소를 하지 않아 형확정에 따른 당연퇴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원의 징계가 2016년 9월 5일 징계 의결 요구되어 2016년 10월 20일에 해임 의결되었는데, 징계 집행은 2016년 10월 31일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 의결된 10월 20일

이후와 징계집행된 10월 31일 사이에 형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1. 이 경우 만일 2016년 10월 25일에 형확정이 된 경우 징계 의결은 효력이 없는 건지요?
2. 적용할 퇴직일자 는 몇일인지요?

회신

2016-11-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중, 형의 확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징계절차 진행 중단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사립학교법 제57조)가 발생하면 소속학교 법인과의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별은 과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배제징계(파면, 해임) 처분 전 형의 확정으로 인해 당연퇴직되었다면, 형의 확정일이 퇴직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77

교원 자율연수휴직 사용 요건

질의

자율연수휴직은 2016년부터 도입되어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신청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학교에 근무한 실제연수는 8년(타 시도 초등학교에서 파견근무 3년 포함)이고, 첫째아이로 육아휴직을 1년, 둘째아이로 육아휴직 2년째입니다. 한 아이 당 육아휴직 1년씩은 재직기간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8년에서 두 아이의 육아휴직 기간 1년씩을 더하면 10년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6-11-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호제12항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휴직대상이며, 재직기간의 확인은 소속 교육청의 연금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이 필요하거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이며 학기단위로 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휴직 허가 여부는 학교급별 교원 수급 상황 등 시·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허가할 사항이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원 자율연수휴직 업무처리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

교원이 난임진단과 질병휴직

질의

2013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결핵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난임진단을 받아 2017년 3월부터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 동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6-11-2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1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휴직원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한 기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가능합니다.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바탕으로 질병휴직의 요건 충족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만일 질병휴직을 하고자 한다면 소속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79

질병휴직 중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질 의

난임휴직 중인 교사가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 난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회 신

2016-12-0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에 대해 질병(난임)휴직 중 해외 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교원의 해외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체류지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80

연구학교 가산점 축소 관련

질의

교육부 내에서 저희 국립초등학교의 교원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2016년도에 부설초등학교에 전입한 교사들은 들어오기 전부터 1.25가 만점인 사항을 알고 지원을 하였기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점으로 상한점을 낮춘다면 2017년도에 지원하는 교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업과 행정에 있어 각 분야에서 최고의 교원들만 모인 교육부 소속 국립초등학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규정개정을 1점에서 1.25로 유지시키거나 2016년도에 전입한 교사들까지는 1.25를 상한점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6-12-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승진가산점과 관련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은 가산점으로 인한 교원 승진 경쟁 과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추진된 것으로, 입법예고('16.4.25~6.9)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구학교가산점 축소 조항 적용을 당초 3년 뒤 적용 예정이었으나, 불이익 대상 교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5년으로 유예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81

학기 중 공무 외 해외여행

질의

초등학교 교원입니다.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이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고

승인하면 연가를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 신

2016-12-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부 예규 '15.1.30)」 휴가의 실시원칙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학기 중 공무 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사유가 특별한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82

육아휴직 가능 여부

질 의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08년 10월 8일생 자녀를 가진 교원이 2018년 2월 말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6-12-2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인사실무(2016.5.개정, 190쪽)」 ‘휴직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르면 만8세 이하인 경우 만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하므로, 만9세 직전일이 속하는 학기말까지 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시 법정 휴직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3

교원의 겸직 관련 문의

질의

현직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이에 장애이해교육과 사회적통합교육 관련 ○○○ 작가 공부를 하여 얼마 전에 ○○○ 공모전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제작사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교육공무원으로 제작사와 계약을 맺어 ○○○ 작가로 일하게 되는 것은 겸직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6-12-2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력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1호 내지 제4호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84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질의

교원이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와 관련해서 지도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6-12-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교원이 위 사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해당 교원의 소속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85

교사다면평가 제도 관련

질의

교사다면평가 부적정 운영사례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요청 드립니다.

교사다면평가가 교사 간 친분에 따라 점수를 주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가 교원성과급과 연동되어 현장에서 불만이 많으며, 대규모 학교는 동료교사를 일일이 상대평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사내용 (한국일보, '16.12.21자)

회신

2016-12-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우리 부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존 3가지로 시행되던 교원평가를 2가지로 간소화하여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 평가를 연계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15.9)」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에 활용되는 다면평가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특성을 고려하고,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평가를 근무성적평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08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다면평가자 구성, 평가절차, 방법 등에 대해 개별 학교마다 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며, 다면평가자 선정에 있어서는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3명 이상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른 적정 인원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구성하므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합리적 절차와 평가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 본연의 업무인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고, 타 교사가 기피하거나 힘든 업무를 맡은 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면평가를 내실화하고, 학교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관련 기사의 내용과 같이 부정적하게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 컨설팅, 행정지도 등을 강화하여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6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질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자녀를 동반(육아휴직대상자)하여 해외를 3주간 다녀올 예정입니다. 육아휴직대상과 기간은 첫째자녀로서 2016.3.1.-2017.

2.28이며 해외여행 기간은 2017.1.1-1.23 예정입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전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요?

회신

2017-01-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외방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교원에 대해 육아휴직 중 해외 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사유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만일 해외방문을 계획한다면 해외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체류지, 자녀 동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7**부부교원의 육아휴직 관련****질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 교원인 경우 한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각각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부부교원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6년까지 가능한 건가요?

회신

2017-02-0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에는 부부공무원의 동일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 등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동일 자녀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018년 중등교원임용시험을 계획하는 대학생입니다. 중등교원임용 전기전자 통신을 전기전자, 통신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행 중인지,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지 등 세부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2-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부에서는 지식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한 고교 직업교육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중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화공·섬유”를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로 세분화하는 등 관련 표시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임용시험 선발은 2017학년도 입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2021학년도부터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9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 관련

질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라 축소된 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 등은 언제부처 적용되는 건가요?

회신

2017-02-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7704호, 2016.12.30)의 개정내용은 제41조 제3항제1호 연구학교 가산점을 총 1.2점에서 1점으로, 제2호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은 총 0.75점에서 0.5점으로 축소, 제4호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은 총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점을 제외한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2022.4.1.부터 적용되어, 연구학교 및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가산점의 경우 종전에 만점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축소된 1점, 0.5점으로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교사 선발 공고 시,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가산점을 0.75점으로 공고한 것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16.12.30)되기 전으로 공고 당시 현행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의 점수를 공고하게 된 것이며, 해당 가산점이 0.5점으로 축소 적용되는 것은 2022.4.1.부터임을 알려 드립니다.

90

전일제강사 예비군훈련 관련

질의

초등·중등 행정실장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전일제강사의 경우 학교

정교사와 똑같은 수업을 해야 하지만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분류되지 않아 학기 중에 수업을 못하고 훈련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일제강사를 정교사와 같이 모든 수업을 담당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일제강사도 기간제 및 정교사와 같이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분류해 주십시오.

회 신

2017-03-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국방부 예비전력과의 회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명시된 강사는 동원예비군 훈련보류 대상이 아니며, 대학의 전임강사나 시간강사도 동일하다는 답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한 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중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한 교육활동 어려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현재는 소관부처인 국방부의 규정에 따라 동원예비군 훈련보류자로 지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강사의 예비군훈련 실시는 방학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

산학점임교사 정년 관련

질 의

저희 학교에는 산학점임교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채용된 기간이 오래되어 무기계약직입니다.(15시간 이상) 문제는 이분의 나이가 올해로 만 60세가 됩니다. 교원의 정년은 62세인데, 이분도 교원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이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니, 60세로 정년을 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3-2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산학겸임교사는 시·도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나 「산학겸임교사 운영지침」 등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학겸임교사의 정년은 교육관계 법령에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의거 60세로 판단하여 업무 처리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다만, 계약제 교원은 임용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어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계속 산학겸임교사로 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제 교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타시·도 교환교사 근무성적 평정 문의

질 의

1. 타시도 교환교사도 파견교사에 해당되어 위와 같이 평정하는지요?
2. 위의 질문1)처럼 교환교사도 위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면 그 근거규정은 무엇인지요?
3. 위의 질문1)처럼 교환교사도 위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면, 파견교사를 평가할 때 원적교는 파견학교의 의견을 '반영해야'(위조문의 표현상 '반드시 반영'이라는 의미로 판단됨) 하는데 원적교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요?

회 신

2017-03-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타 시·도 교환교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1항제6호에 의한 파견

근무에 해당되며, 이는 학술 진흥과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상호간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파견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 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 소속기관의 평정권자는 파견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견 유형 등에 사실 확인 및 유형에 따른 이의절차 등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권자인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93

교원 연가 관련 질의

질의

1.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연가저축제가 시행된 것으로 압니다. 교원휴가 처리업무 요령에는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반영계획이 없는지요?
2. 교원의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서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기 중이라도 연가를 내고 여행이나 자녀행사(졸업 및 입학식)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육아를 목적으로 출산휴가 후 남은 연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장기간 연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기관장에게 미리 알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가 시작 몇일 전에 기관장께 이야기해야 하는지요?
3. 같은 이유로 배우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 신

2017-03-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1. 우리 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에 대한 동 내용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시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가를 활용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복무권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가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해당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94

임용고시 결격사유 관련 문의

질 의

임용고시 합격해도 중증근무력증이 결격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에게 들어서요. 중증근무력증으로 확진을 받은 환자인 경우 임용고시에 합격해도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4-0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및 같은 규정 제5조(채용 금지)에 따라,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같은 규정 별표)에 따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채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결격사유가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제한된 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교육청 임용시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95

교원의 병가일수 산정 관련

질의

교사로 일반병가 60일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계속 요양을 하고자 제 가용연가일인 21일을 모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학교재량휴업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속으로 정하는지(예 : 4.30~5.20) 아니면 산입하지 않고, 각각 21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4-1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연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휴가일수의 계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96

사립학교장 명예퇴직 신청 요건 관련

질 의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장이 임기를 4개월 남겨 두고 명예퇴직 신청 시 법원에서 승인결재를 하지 않아 교육청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요?

※ 정관에 학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교사로 재임용되지 않으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나이가 정년보다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회 신

2017-05-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교장 중임 임용 또는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서 별도 임용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명예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97

교원임용고시 답안 공개 관련

질 의

교원임용고시 서술형 및 논술형의 모범답안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 교사, 더 나아가 시험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회신

2017-05-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와 2차시험의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취득점수는 「중등교사 신규임용전형 시·도공동관리위원회」 등에 의거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시험출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한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의 특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너그럽게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이 획득한 시험 과목별 점수 등을 참고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향후, 우리 부에서는 귀하가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

기간제교원의 고용안정 관련

질의

기간제교사도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전환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휴직자 대체는 전환대상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미발령 자리로 채용되는 기간제교사인데요, 이 미발령 자리도 다음 학기나 이듬해에 신규교사가 발령을 받으면 기간제 수요가 사라지기에 상시지속 자리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기간제교사도 정규직화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5-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현재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제교원의 도입 목적 등에 따라 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제6호 대통령령(「교육공무원 임용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교원은 현행 법령상에서 정규 교육 공무원으로의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정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의해 공개전형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은 임용방법, 적용규정 등이 다릅니다.

99

산학겸임교사 자격 관련

질의

중등교육법 임용령 제7조의2(겸임)제2항제5호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의 임직원과 그 직무내용이 유사한 교육공무원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체 임직원을 교원으로 겸임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업체 임직원의 겸임이 가능한지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임직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5-1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학겸임교사 임용의 경우에는 국·공·사립학교 모두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번거로워도 해당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산학겸임교사 임용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0 기간제교원의 겸직 가능 여부

질 의

정교사는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학교)의 경우 겸직이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과외로 수업을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 신

2017-05-1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정규교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복무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규정대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된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영리업무나 겸직 금지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계약 당사자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사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지침을 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101 스승의 날 폐지 건의

질의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오.

회신

2017-05-2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제16호에 따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는 기념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신분으로서 교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지정되므로 근로자의 날을 교사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사인 교육공무원을 포함하여 일반직 공무원, 군인, 경찰 등 여타 특정직 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경진대회 등과 관련하여 학생을 인솔하여 출장을 아래와 같이 다녀오고자 합니다. - 출장일시: 토요일(휴무) 09:00~17:00 - 이동수단: 공용차량(학교버스) 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와 관련하여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토요일 근무시간을 평일과 같이 09:00~18:00로 볼 수 있는지요?

2. 교사가 출장(09:00~13:00), 시간외 근무(14:00~17:00) 병행 신청이 가능한지요?
3. 가능하다면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4. 위와 같은 사안 발생 시 토요일(휴무)에 따른 복무 처리와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법규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5-2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3. 출장과 초과근무’(제39호, p.87)에 따르면, 출장기간 중의 시간외 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학교출장 및 시간외 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근무를 명령하는 소속 기관장의 재량사항이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03**교육공무원 타 시·도 전출 관련****질 의**

직장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전출 업무를 교육부로 다시 가져오고, 타 시·도 별거부부 공무원 고충해소 방안 마련으로 신규교사 배정 시 별거부부 공무원 등 타 시·도 교류정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05-2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의 시·도 간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에 따라 1:1 동수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해당 시·도교육청의 시·도별 특성, 교원의 수급 상황, 교원 임용시험 지원 현황, 인사교류 대상 및 신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도교육청 간 자율적 협의에 의해 인사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시·도 간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인사교류가 아닌 우리 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시도 간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존 인사제도 기준에 따라 전보순위에 해당되는 교사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별거부부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부 차원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한 기준 권고, 일방전입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시·도교육청 인사교류 협의회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104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관련

질의

1.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내용 중 “학교법인의 이사”는 사립 학교법 제2조(정의) 제2호의 학교법인의 이사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 되어 사립학교법 제62조에 의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으로서의 임명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근거한 학교운영 규정에 “법인의 이사를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도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지 질의합니다.
2.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내용 중 “해당 학교의 교원”에 교장은 포함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3. 만약, 질의 1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징계위원의 임명대상이 될 수 없을 경우, 동시에 사립학교법 제62조 제3항제2호에

다른 외부위원의 자격이 된다면 외부위원으로서 교원징계 위원으로 임명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4.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 신

2017-06-2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및 해당 학교의 장의 징계위원 임명·위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같은 항 제2호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없으나, 같은 호 가, 나, 다목에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설치조항은 필요적 외부위원 포함, 이사인 위원 수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은 심의·의결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05

현직교원의 타시·도 임용 관련

질 의

현직교원이 임용시험 합격 시 사표수리(면직 처리) 없이 인사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06-2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교원 임용시험도 시·도교육청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이 타 시·도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신규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교원의 임용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면직처리된 후 신규 임용되는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임용시험에 합격 시 사표 제출 없이 타 시·도 간 인사 이동하는 방법은 현행 법령상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106

외국 국적인자의 기간제교사 가능 여부

질 의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로 거소증과 F-4로 한국에 들어와 기간제교사로 일을 하고자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이민 가기 전에 중등1급 정교사로 고등학교에서 19년 교육을 했던 영어교사입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채용제한), 제10조의4(결격사유),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외국국적의 재외동포를 채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법률적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재외동포(F-4)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국내 모든 취업 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활동은 제외되는지요? 어디에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몰라 교육부에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08-0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대한민국 헌법」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교원)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학교장(재단)이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강사 등으로 임용될 수는 있으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가 불가하여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2017년 4월에 발행한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절차에 따라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의 자격 취득 여부가 안내되어 있으니, 자격취득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7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질의

1. 1997년 3월 이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었는데 몇 년도부터입니까?
2. 교원평가제를 규정한 법령(혹은 교육규칙 등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은 어느 법령(혹은 교육규칙 등 자치법규나 행정규칙)이며 몇 조, 몇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3. 아울러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방법과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회 신

2017-08-0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1.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구성원(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이 참여하여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에 활용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자 2010년에 도입되었으며,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662호)’ 제18조~제22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17호)’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 학년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교원 상호간 평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108

사립학교교원 채용 관련

질 의

현재 전국의 중·고등사립학교는 80%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발과정 100% 인맥이나 뒷돈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를 다루었습니다. 전국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정유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 역시 국가에서 선발해야 합니다.

회 신

2017-08-1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사립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채용 비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채용 시 공립임용시험에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교원채용 공립임용시험 위탁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 확보 등 사립학교 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09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 관련

질의

나이 구분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고, 제출서류 간소화와 인력풀 제도 등의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회신

2017-09-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현재 기간제교원 제도는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해 교육감 권한으로 운영됩니다. 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기간제교원 채용 시 제출서류 간소화, 각 시·도교육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인력풀 제도로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간담회에서 협의하고 적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110 초등학교 교사의 성비율

질 의

연도별로 초등학교에서 임용되는 교사들의 남/녀 수와 성비율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9-1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2016년 기준으로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77.0%, 중학교 68.8%, 고등학교 5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 장애인교원 현황

질 의

초등학교 장애인 상담사 배치방안을 연구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장애인교원의 비율이 궁금하니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10-1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17.4.1일 기준 시·도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17년 초등 장애인교원 비율은 0.67%임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교육통계 관련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2 교원 성비위 관련

질의

현직교원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현황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 성비위 징계교원 : '14년 44명→'15년 97명→'16년 135명→'17년 상반기 90명

회신

2017-10-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의 성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는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성비위 교원을 배제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15.4.9.)」을 개정하여 학생 대상 성비위인 경우 최소 해임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성폭력을 할 경우 최소 해임

또한,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16.1.27.)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등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 완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원 성비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성비위로부터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3 중등임용시험 체육 가산점 관련

질의

임용고시 가산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등임용고시 실시 시 지역가산점이 2차에

만약 반영된다면,

1. 초등임용고시 체육과목은 가산점이 있습니다. 중등임용가산점도 초등과 같이 체육과목 가산점이 2차에 반영이 되나요?
2. 정책을 통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만약 초등과 다르게 중등에서는 가산점이 반영이 안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신

2017-10-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임용시험의 가산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교육감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경력이 없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지역가산점 3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직초등교원이 대도시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산점 부여 기관인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가산점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는 지역가산점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현행 1차시험에서 2차시험까지 가산점을 반영하도록 법령 개정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중등교원 임용시험의 체육가산점에 대한 2차시험 반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

시간외 근무 사후 신청 관련

질의

시간외 근무 신청의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겠지만 교육현장에서 학생 지도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사전신청을 못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사후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 신

2017-11-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34호, 17.9.5.)에 따르면, 사전 초과근무 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 종결 후 퇴청 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명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사후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복무권자가 초과근무 명령 여부 및 사후 승인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115

교원임용시험 결격 사유 관련

질 의

제가 공무원이 되고자 준비하려고 하는데 과거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께서는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이 기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다른 문제 전혀 없이 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친구가 몇 있는데 친구 한 명이 말하길 면접에서 이런 기록 있는 경우 무조건 탈락시킨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의 경우는 오래 지난 일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하여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1. 얼마나 시간이 경과한지와는 상관없이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언제까지고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2.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야의 공무원 채용에서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래 전 그 기록 하나로 인하여 공무원을 포기하여야 하는가 걱정이 됩니다.

회 신

2017-11-1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시·도교육청의 교원임용시험 공고문에 공고된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별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 **교원 자격·복지**

116

교원자격과 의무복무

질 의

1983년에 00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여 2급 정교사(음악)를 취득하였고, 그해 2년간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으로 교직을 그만두었고, 00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재직 중 교원자격이 없다 하여 강제로 퇴출되었습니다. 왜 교원자격이 박탈되었는지와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6-12-0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시행 1982.1.4.)과 관련하여 예전에(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없음) 사범대학 졸업자는 우선하여 채용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제1항(시행 1982.9.25.)에 교육대학 졸업자는 감독청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종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령」 제152조에는 교육대학졸업자로서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케 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더하여 「교육법 시행령」 제157조제2항에서 제15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152조의 규정은 국립 또는 공립의 사범대학(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포함한다)에 이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법령에 의해 「교육 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임용된 자로서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제1항 및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교원자격증이 박탈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교원성과평가 관련

질의

비교과 교사(보진, 사서, 전문상담 등)들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교원성과평가 기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회신

2016-12-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우리 부에서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하여 비교과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 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의 평가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교사 성과급 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 또한 2017년도 다면평가관리위원회(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 시 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사가 1명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을 안내드렸습니다. 보건교사의 주 업무인 응급처치를 수업시수로 인정해 주는 것의 요구 부분은 다면평가 평가내용을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해당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침 수립 시 대안으로 제시하신 의견을 검토하여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그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8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질 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 지역 공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교원자격이 있어야 근무 가능한 지역교육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07년부터 순회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강사는 특수교사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2014년까지 교사처우(호봉 및 근무조건 등)를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 기간제교사나 정교사로 전환 시 모두 교육경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원에서 교육부 교육경력 편람에 '학교 기간제교사'는 명확하게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교육지원청의 순회강사 경력은 편람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교육부의 답변을 받길 원합니다. 제 교육경력이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6-12-2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 교육 경력은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에서 귀하의 질의와 가장 관련 있는 낱말은 ‘교원’으로 해석되며 교원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 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를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사는 교원 외로 분류되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아 강사의 경력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호봉과 관련된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운영되며 자격과 관련된 교육경력은 위에서 제시한 「교원자격검정령」으로 인정되어 법령이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9 사학연금 관련 문의

질의

군인연금을 사학연금과 합산할 경우 연금수령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6-12-22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민원인의 군인연금기간(1983년 10월 ~ 2005년 9월)을 합산하게 되면 1995년

말 이전 임용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퇴직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 2000년 말 당시(17년 3월)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2년 9월)의 2배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바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 6월(20년 미달기간의 2배) 이상을 재직하면 되므로 군인연금에서의 재직기간(2001년 이후 4년 9월)을 포함하여 사학연금에서는 9월 이상만 재직하면 퇴직하는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20

임용 전 대학원 경력과 보수 관련 문의

질의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관련 문의입니다.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에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여름 대학원 경력 문의 시 대학원 학위 취득경력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여 석사의 경우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내에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2008.1) 88쪽에 예외적으로 2001.9월 이전 학위취득자의 경우 입학일이 아닌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모두 입학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2008년 1월 이후 보수 업무편람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1999년 학위취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변경여부만 간략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회신

2016-12-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3] 2. [비고3]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2011.10.20. 부칙에 따르면 이 예규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교육공무원 보수 업무 등 편람」 및 각종 교원 보수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내용은 이 예규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21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경력 환산

질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경력 상통직은 호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02-01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실업계 분야의 현장근무 경력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을 교직에 유치하여 현장의 적응력 있는 실업계 교육을 실시코자,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이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을 상향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10할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해당 경력에 대해 상향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후 산업체 경력은 상통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

공통과학과 통합과학 표시과목 관련

질의

공통과학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새로이 통합과학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임용고시와 사립학교교사로 채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교사 중에서 공통과학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은 별도의 연수를 통해 자격증명을 변경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는 연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회신

2017-02-0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12호(2016.12.8. 일부개정) 부칙 제3조에 공통과학 자격증은 통합과학 자격증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통과학 자격증은 통합과학 자격증의 효력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관련

질의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취득해야 할 학점 등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2-0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과 석사학위가 동시에 발급됨에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의 ‘나목’에 해당됩니다.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1]에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이는 직무관련 영역 50학점 이상으로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2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시기

질의

○○학교 교직과정 ○○전공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교사자격을 취득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학과에서는 2학년 때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교사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회신

2017-02-0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 신청자 중 인성, 적성 및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귀하께서는 4학년으로 재학 중이므로 교직과정이수예정자 선발이 불가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초임 호봉획정 관련

질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유사경력 중에서 그밖의 경력 중 8)그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에 의하는 경력은 30퍼센트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 미식축구 국가대표선수로 대한미식축구협회 소속이었다면 30퍼센트 적용 경력에 해당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경력이 어떠한 것들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2-2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그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대상기관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대상경력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미식축구협회 정관 1조(명칭)에 사단법인 대한미식축구협회라고 되어 있으며 민원인께서 근로계약 체결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상근한 경력일 경우 3할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의 임용(호봉 획정 등)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1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의거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된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8)에 나와 있는 대상기관과 대상경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6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관련

질의

사립학교 성과상여금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평정을 할 때, 병가를 비근무일수로 잡아 점수에 차등을 두는 규정이 가능한 규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3-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17년도부터 성과상여금에 활용되는 다면평가 평가지표(기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예시에 따라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전체교원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127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관련

질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3-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 제 2016-106호)」 제6조9항에서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 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4조 1항에서 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를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 신청하신 곳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되지만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무시험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28

교육봉사활동 실적 확인 관련

질의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에 따른 교육봉사(60시간/2학점)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 중에 학교와 이해가 달라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첨부1) 실시확인서와 같이 공공기관의 장이 인증한 비영리기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안내받은 대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려 했으나 기관방문결과 해당서류 대신 아동복지시설 신고증과 세무서발행 고유번호증 (각, 첨부1,2)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서류상 흠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7-03-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9항에서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제9항의 2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출하신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을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한 인증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관의 장(00 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위 시설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129 교직수당 가산금 관련(1)

질의

교직수당 가산금 중 실과교원수당 월 10,000원이 있습니다. NCS 도입으로 계열구분이 쉽지 않기도 하지만, 전기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4-0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직수당 가산금5) 실과교원수당에서 월10,000원을 가산하는 취지는 기계 및 전자 관련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및 기계, 전자통신, 전기과목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를 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학교의 명칭이 변경 및 NCS 교육과정 도입으로 계열구분이 어렵더라도 위 취지를 고려하여 지급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30

교직수당 가산금 관련(2)

질의

교직수당 가산금 중 원로교사의 교육경력에 요육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7-04-04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5만원의 교직수당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육경력”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로교사수당 관련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의 교육 경력을 준용하고 있는 바, 「같은 령」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경력은 초등학교 등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고 이는 실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 요육요원은 교육경력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3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질의

○○대 4학년 재학중인 독어교육과 학생입니다. 제가 졸업이 2018년 2월 예정입니다. 졸업을 하려면 응급처치 교육을 2회 받아야 하는데 응급처치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학교에 문의해보니 1년 간격으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해서 제가 졸업을 못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원자격검정령을 살펴봐도 1년 간격으로 2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응급처치 교육기관에서 1학기에 1회 교육을 이수 하고(학교주관 1학기 교육은 이미 날짜가 지났다고 합니다) 2학기에는 학교에서 주관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 예정대로 2018년 2월에 졸업할 수 있을까요?

회 신

2017-05-3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에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관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제시하고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3에서 학년도별 실습 횟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습 기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 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2016학년도 입학생 중 다음의 ㉠과 ㉡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 인정 기준을 2017학년도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2017년 2월 이전에 「교원자격검정령」 별표1 제4호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기준”을 이미 충족한 경우 ㉡ 2018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 중 위의 “학년도별 실습 횟수 1회” 인정 기준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1년 동안 응급처치 교육을 2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보건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질 의

저는 1994년 ○○간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에 간호사시험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합격하여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 법 상 보건교사 자격은 다 이수했으나, 간호사시험에 떨어져 교원자격증 신청을 못 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시험에 떨어져 무척 힘이 들어서, 그 다음해 합격 후에도 학교에 문의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현재 보건교사(2급) 교원자격증이 필요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그 후 늦게 지금이라도 간호사면허증과 보건교사 교직이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17-06-13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법」 부칙 에서 양호교사(현 보건교사)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1. 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자로서 간호원면허증을 소지한 자 2. 전문 대학의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간호원면허증을 소지한 자

양호교사 1호 기준에 의하여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했거나 2호 기준에 의해 전문대학 간호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경우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하신 이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1항의 합격기준에 의해 교원자격검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졸업 이후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통하여 교원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33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 관련

질의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방학 중 41조 연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방학 중 등교하지 않는 날은 학교외 기관에서 41조 연수를 학교장으로부터 허가받아 연수를 하면 되는데, 방학 중 방과후수업(보충수업)하러 평소와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도 41조 연수를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내야 한다면 연수 장소를 어떻게 하나요? 학기 중에 저희 학교는 8시에 등교하여 4시에 마칩니다. 방학 중에도 8시에 출근하여 늦게 마치면 4시, 이보다 좀 더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일찍 마치면 41조 연수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회신

2017-06-2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는 교원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것이지 방학기간 동안 교원들의 복무를 규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또한 조기퇴근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 되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교원이 연수를 받지 않고 보충수업을 하는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낼 수는 없습니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에 맞추어 근무를 해야 하며,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승인은 소속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근무지외 연수의 시간단위 사용여부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134

영양교사 자격 취득 관련

질 의

저는 1983년 3월 2일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가정) 교원자격증을 받았으며, 1983년 3월 16일에 영양사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979년에 대학교 입학하여 식품영양학과 재학중 교직이수를 하였음) 저의 경우 영양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자격증 발급은 어디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2017-06-28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2]의 ‘4) 사서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에서 영양교사(2급)의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 사람
2. 영양사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귀하께서는 2급 정교사(가정)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셨다 하더라도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영양 교사 (2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주신 정보에 의하면 민원인은 위 2호의 자격 기준에 의해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 학위를 받으시면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5

육아휴직부터 3년 경력인정 여부

질 의

저는 교사입니다. 2017년 3월부터 둘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3년 모두 경력인정이 된다고 들어서 둘째아이 앞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원을 쓰러 학교에 가 호봉획정표를 보니 이번 휴직기간이 경력으로 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실에 물어보니 아직 지침이 내려온 바가 없다고 하고 교육청에 문의하여도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인가요?

회 신

2017-07-05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임용령」 31조 개정으로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은 일반직공무원이고, 교원의 육아휴직 시 경력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 시 경력평정으로 산정되며 호봉승급 산입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의하여 첫째, 둘째 자녀의 경우는 1년까지, 셋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에 대해 산입되어 과거와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136

기본이수과목 일치 여부

질 의

○○대학교 교육대학원 생물교육전공에 재학중입니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검정기준에 생물교육 기본이수과목에 '생물화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위 과목이 '생화학'과 동일한 과목으로 이수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2017-07-10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생화학’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 고시 제2016-16호)」 제4조 관련 [별표3]의 ‘생물’ 표시과목의 11개 기본이수과목(붙임 파일 참조)과 과목명이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 고시」 제12조제1항은 임의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다만 교원양성기관이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할 경우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 후 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2조(과목의 명칭과 교육과정 운영) ①교원양성기관에서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교직과목 및 기본이수 과목(또는 분야)은 임의로 과목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과목명을 변경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과목의 내용과 고시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의 교수요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과목이 ○○대학교 ‘생물과’의 기본이수과목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대학에 문의하실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13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근무경력과 호봉

질의

교원의 임용 전 호봉인정경력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근무경력 인정비율에 대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8-29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할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11.8.29.부터입니다. ○○○○상업학교에서 근무한 경력(1985.9.2.~1990.2.28.) 중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로 지정되었던 1987년도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근무경력에 관한 질의, 답변의 1989년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에 따르면 7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3할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8

중등학교 교원자격 7호 관련

질의

원래 초등 이상이면 다 된다는 항목에서 중등자격증도 포함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17년도 편입생부터는 이 항목이 초등 교원자격증만 인정이 된다고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사범대를 졸업하고 일하다 다른 전공의 교원자격증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 대학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 중인데 학교측에서 이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2학기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알려주더군요. 초등 교원자격증만 인정하고 중등교원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등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11-0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15.9.)에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대해 중학교 준교사 이상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 질의제목: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

우리 부는 이와 관련하여 '16학년도 신·편입학을 준비 중이거나 선발된 사람 등의 신뢰 보호를 위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16.11.)*에서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 학교 정교사가 포함되지 않음을 다시 확인받았고, 대학에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질의제목: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에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포함되는지 여부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과 관련된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판례·해석 등 → 법령해석례, 검색 키워드: 초등학교 준교사

139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 취득 관련

질 의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유치원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유치원 경력만 인정되는 것이지요?

회 신

2017-03-02(행복한교육)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르면 유치원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나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0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무시험검정

질 의

2014년 대학을 입학하였으나 군문제 등으로 휴학하고 2017년에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은 어떻게 적용받는 건가요?

회 신

2016-06-01(행복한교육)[교원복지연수과]

2학년 때 선발하는 것이 원칙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 -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합니다. 이에 2014년 입학자 휴학 후 2017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 2016년(2017년-1)을 입학년도로 해석하며,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관련 교육과정 등 무시험검정은 2016년 입학자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이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141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관련

질 의

교(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한국사 관련 사항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회 신

2016-08-01(행복한교육)[교원복지연수과]

2018년 1월 1일부터 교(원)감자격 연수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3급 이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연수원에서 실시한 한국사 관련 연수 60시간 이상의 이수증 사본 등 공증문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관련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www.historyexa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한국사 관련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은 시도교육청 연수원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시행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42 기본이수과목 관련

질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데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회신

2016-08-04(행복한교육) [교원복지연수과]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의 [별표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년도별로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년도의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 행정규칙 메뉴에서 검색 가능

143 교직과정 이수와 편입학

질의

대학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편입한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6-09-01(행복한교육) [교원복지연수과]

교직과정 이수희망자는 2학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을 해야 하므로 3학년에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가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대학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이 부여되는 학과에 편입학했을 때 전적학교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여 정해진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고, 사범대학·대학 교육과에서 편입한 학생의 경우나 복학생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교육과정

144 선행학습금지법 관련

질 의

선행학습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4-07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45 자유학기제의 수학교육 관련

질의

자유학기제의 수학교육에 있어 개별 수학기호가 가진 고유의 논리를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여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6-16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공교육진흥과]

자유학기제의 교과 수업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중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와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동학습, 토론수업 등 학생 활동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 특성에 맞는 소재를 활용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습 동기유발 및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실천사례 연구대회,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다양한 수업방법 개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자유학기제의 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내용은 교실수업 개선사례 발굴에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 졸업예정 학생선수의 상급학교 훈련 참가 관련

질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입니다. 저희 학급 졸업예정자 중 관내 중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겨울방학 간 진학 예정학교의 동계 전지훈련 참여와 관련하여 중학교로부터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20여 일간 중학생들과 중학교 지도교사, 코치들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훈련이나 줄업이 2월이기에 소속 자체는 저희 초등학교 소속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관례적으로 이루어져 오는 사항인 것은 잘 알고 있으나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폭력사건 발생 시 책임 여부와 상급학교 훈련 참여자체가 법률적으로 명확히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저희학교에서 준비하거나 챙겨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1-03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가. 상급학교장의 합동훈련 참가 요청 공문을 소속 학교에서 접수하게 되면, 학교장은 사전 학부모 동의와 학생선수의 생활지도,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명확하게 하여 훈련 참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항은 학교급 전환기에 있는 학생선수의 지속적인 운동참여와 상급학교 조기적응 등을 위해 학부모 및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학교장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6학년 학생선수가 중학교 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 소속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여부, 안전한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훈련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7**어린이집의 인성교육 관련****질 의**

저희 원에 의무교육이라고 하면서 교직원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전화가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성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직원 인성교육은

학교법에 명시된 기관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도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2-14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제4조),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인성교육 관련 연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148

학교 교기육성 지원금 공개 관련

질의

초·중·고 각 학교에서 교기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체육종목의 지원금이 내년 얼마나 지원되고 집행되는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체육특기자를 키우는 부모라면 늘 궁금한 사안이고 제대로 집행 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급학교 홈페이지에 매 대회 때 지출된 내역을 공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지 모르지만 개선되어 불신을 해소하고 공명정대한 교육행정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

2017-05-24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우리 부는 학교운동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경비를 반드시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쳐,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17.2.1.)

또한, 각종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비용은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자녀가 소속된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내역을 알고자 할 경우, 학교 행정실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9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운영 관련

질의

초등학교 1,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목을 전담교사로 배정하여 수업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6-12-27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첫째, 안전한 생활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타 교과와의 통합수업 등을 위해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현재 1,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현장 선생님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사항입니다.

둘째, 1,2학년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담교사가 1,2학년에서 가르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 본연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담교사는 ‘안전한 생활’을 가르치기보다는 별도의 수업(예, 창의적 체험활동 놀이교육 주당 1시간 등)을 권장합니다.

셋째, 초등학교 1,2학년에 전담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부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경우

1,2학년 전담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초등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따라서 1,2학년 전담교사 배정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 전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넷째,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인사 관련 지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지침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기준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성장에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모든 교직원이 서로 협업하는 학교 문화가 중요하겠지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150

4차 산업혁명과 초·중등 교육과정

질의

초·중·고 학생들 교육과정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관련된 수업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독일같은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CAD나 3D프린팅, 코딩같은 기술을 교육하고 있어서 혹시 우리나라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 해서요? 아니면 없다면 언제부터 진행될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7-05-1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문의하신 CAD 과목은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3D 프린팅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유학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기술·가정 과목에서 3D프린팅을 다루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은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정보’ 등의 관련 과목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코딩, 또는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는 SW교육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초·중학교에서 SW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015년 9월 23일에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5~6학년의 ‘실과’에서, 중학교는 2018년부터 ‘정보’ 과목에서 SW교육을 필수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는 ‘심화 선택’ 과목이었던 ‘정보’ 과목을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진로와 연계한 심화된 SW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51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 활동의 학생부 기재 가능 여부

질 의

1.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에 선발되어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 기록이 가능합니까?
2. ‘군산글로벌리더아카데미’ 내에서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진로 탐색 연구활동(학생 자발적 활동)을 할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 내에 기록이 가능 합니까?
3.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계획 운영하는 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합니다. ‘○○글로벌리더아카데미’가 시 운영 재단과 교육지원청이 MOU 체결을 하고 운영되는 활동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기록이 가능합니까?

회 신

2016-12-01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1. 방과후 수업은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동일학교급에서 개설한 타학교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인 경우에 교과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문의하신 진로 관련 동아리활동의 경우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의 동아리인 경우는 입력이 가능합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특기사항(봉사활동 제외) 중 외부 기관의 활동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체험활동만 가능하므로 교육청이 지자체와 MOU를 맺은 경우는 기재가 가능하나, 지자체가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경우는 기재가 불가합니다.

152 학적용어(입학, 전학)의 의미

질 의

입학과 전학의 용어의 뜻이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입학의 경우 최초 학교에 입학할 경우, 전학은 학년 진행 중 이동의 경우, 정확한 용어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1-0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169호)에 의하면 ‘입학’은 학교에 들어감(1학년), ‘전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을 의미합니다. 즉 입학은 해당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전학은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53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의 진술 방식

질 의

문의드릴 내용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진술시 저희 교육청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문장의 끝맺음을 명사형으로 끝맺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장의 끝맺음을 명사형으로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17-01-1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침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제작, 보급하여 학생부 작성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서술형 항목에 대한 진술 방식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요령」의 기재 예시를 통해 명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1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 p10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예시 참조

154

초·중등학교의 학기의 개념

질 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의 "학기"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3-16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1학기의 종료와 2학기의 시작 시기는 방학과 관계없이 수업시수, 수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학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155 출결 관련 문의사항

질 의

1. 학생이 수업시간에 복통이 있어 보건실에 간 경우에 '병결과'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 학생이 보건선생님의 판단으로 병원에 간 경우 '병결과' 처리해야 하나요?
3. 위의 두 가지 사항을 학교장이 정해서 간단한 확인서를 보건선생님이 인정한다면 수업시간에 출결로 대체할 수 있나요?

회 신

2017-04-25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교육부 훈령 제195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해설 및 기재요령의 제8조(출결상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의 '3. 지각·조퇴·결과'에서 "결과" 용어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수업 시간에 참여하였다면 '결과' 처리하지 않으며, 보건교사의 판단으로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병결과' 처리합니다. 이 때,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처방전, 학교장이 허가한 보건교사의 확인증 등을 질병으로 인한 결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56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질 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서열평가라면 없어야 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운영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6-2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우리 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되지 않고 원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금년도의 경우 표집학교 이외는 교육청별 자율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표집평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7

학교도서관 운영의 역사

질 의

1. 1997년 3월 이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개설되었는데 몇 년도부터입니까?
2. 학교도서관을 규정한 법령은 어느 법령이며 몇 조, 몇 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3. 아울러 초·중·고등학생들은 어떨때 학교도서관에서 무엇을 합니까?
4. 학교도서관에서 행사 등은 얼마나 합니까?

회 신

2017-06-27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도서관 첫 개관연도는 1952년(진주여자고등학교)입니다.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은 「학교도서관진흥법」입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 및 「도서관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 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학교도서관 행사는 각 학교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도서관 행사 횟수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58

국가기술자격증 학생부 입력 관련

질의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무인회전익, 국토교통부장관 발행)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등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7-1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10조에 근거하여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은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발급·관리되는 국가자격증에 해당하므로, 위 훈령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59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 기재 관련

질의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상황에 정식으로 출판된(ISBN 번호도 부여된) 전자책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2017-08-0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교육부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2017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읽은 책의 형태(종이책, 전자책)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간행물(책)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와 같이 저자, 발행인, 발행일 등을 표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60

봉사활동의 학생부 입력 관련

질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올해 초, 즉 1학년 말에 교육봉사를 14시간, 헌혈을 2회 한 봉사기록을 나이스에 연계하지 않아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선생님께 가져가 보았지만 작년 기록은 등록이 안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자세히 찾아 본 결과, 네이버 지식인에 교육부 답변자분께서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으며,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고, 또 선생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8-29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 제19조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는 학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년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된 이후 실적연계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다음 학년도에 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근거하여 학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절차는 해당 학년도 담임선생님에게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하여 정정을 하게 됩니다.

161

학교생활기록부 동아리활동 관련

질의

1. 지역 학교 동아리와 연합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할 경우, 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까?
2. 만약 연합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을 다시 교내 동아리활동에 활용한다면, 각각의 활동(연합동아리에서의 활동, 교내에서의 활동)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불 여부가 궁금합니다.
3. 지역 학교 동아리와 연합동아리를 구성하여 공동 소논문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는 선생님께 보고서의 형태 등으로 제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4. 교내 동아리가 사전 계획을 제출,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관련기관 견학(ex: 사법 연구 동아리에서 법원 견학) 등을 진행할 경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합니까?

회신

2017-10-12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운영과]

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활동 포함) 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 합니다.(단, 봉사활동 제외)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 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 2)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예) A중학교 학생이 C고등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활동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나, B고등학교 학생이 C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음.
- 3)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을 입력한다.

2.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으므로 같은 활동내용을 중복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3.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된 연구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시간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답변1과 마찬가지로 학교교육 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 체험활동의 경우 기재 가능합니다.

162

198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 인쇄 방식

질의

1970~198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에는 글자가 금속활자체가 아니고 지금처럼 디지털 인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한 1982년도에는 지금처럼 고급 컴퓨터도 없고 고급 인쇄기도 없었음에도, 교과서가 칼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책은 모두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희 학급에만

칼라로 된 책이 나올까 하고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으로 칼라 인쇄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1-18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교과서 발행사에 확인한 결과, 1982년도에 공급된 교과서는 오프셋 인쇄기를 사용한 낱장 인쇄 방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오프셋 인쇄기는 평판 인쇄기의 일종으로 판면의 잉크를 블랭킷이라고 부르는 고무 시트에 한번 옮기고 다시 그 블랭킷 위의 잉크를 종이에 전사하는 방식의 인쇄기입니다. 오프셋 인쇄기는 기종별로 1색기, 2색기, 4색기가 있으며, 칼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4색기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1982년 초등학교 재학 당시 사용한 칼라 인쇄 교과서는 오프셋 인쇄기 중 4색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63

초등 교과서 한자표기 관련

질 의

교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난 1월에 발표되었던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300자 병기'의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표된 이후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에 따라 이 정책도 재고하는지, 아니면 추후 간담회와 같이 의견을 취합하는 형태가 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에 예정대로 실시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회 신

2017-08-30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 교과서정책과]

거론하신 '초등 교과서 한자 300자 병기'는 자칫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 300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5-6학년 교과서의 한자 표기는 집필진과

심의회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교과서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몇 자가 표기될지 알 수 없습니다. 초등 교과서 한자표기는 현장적합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최종 내용이 확정되면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검정실시 공고 내용에 포함되며, 올해 1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4

초·중등교육과정 용어 관련

질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수업시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이수 단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수단위」란 무엇인가요?

회신

2017-04-01(행복한교육) [교육과정정책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기준인 ‘단위’의 개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단위는 2단위×50분×17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에서는 총 86단위를 교과별 필수이수단위로 지정하여 전 교과영역에서 골고루 기초소양을 함양하도록 균형학습을 유도하고 있으며, 교과별 필수이수단위 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과정은 94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로 고등학교 재학 3년간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가 됩니다.

※ 교과별 필수이수단위 :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사회 10단위, 과학 10단위,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 생활교양교과 16단위

165 초·중·고학생 교육비 신청 관련

질의

초·중·고학생(저소득층 학생 포함)의 교육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신

2017-03-01(행복한교육) [학생복지정책과]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2017. 3.2.~3.24.까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학부모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166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련

질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학교폭력 관련 내용은 언제 삭제되나요?

회신

2016-06-01(행복한교육)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5호)제1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II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167

교과서 구입 관련

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회신

2016-08-01(행복한교육) [교과서정책과]

초·중등 국검정 교과서는 해당 출판사를 확인하여 문의하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검정교과서는 (사)한국검인정교과서홈페이지(www.ktbook.com)의 ‘교과서 구입’ 메뉴에서 해당 검정교과서를 조회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교과서관매서점’ 메뉴에서 인근 서점의 재고를 확인 후 방문 구입도 가능 합니다.

168

해외 유학생의 전입 관련

질의

재외한국학교에서 재학(2년 미만) 중 한국의 중학교로 전학 시 해당 중학교의 정원 내에서 전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원 외 인원으로도 전학이 가능한가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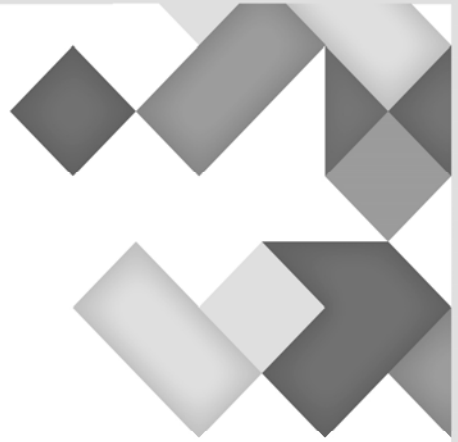
2016-08-05(행복한교육) [학교정책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재외한국학교는 국내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으로 간주되며,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의 전출입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를 근거로 볼 때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이동 시 국내학교와 동등한 전출입 절차를 따르므로, 정원 내 전입인원이 산정됩니다. 다만, 전편입학 세부사항 관련 내용은 시·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전입하시고자 하는 학교의 소관 교육청에 해당 사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고등교육



■ 학사·제도

1

공공도서관 및 국·공립대학도서관 주소

질 의

종중 발간 도서를 기증하고자 국·공립도서관의 주소를 알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국립대학도서관 주소도 알고 싶습니다.

→ 도서 기증을 위해 공공도서관과 국·공립대학도서관 주소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9-21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학술진흥과]

국·공립대학도서관 주소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http://knula.or.kr>) 접속 → 회원교현황 → 회원 도서관 → 공공도서관 주소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정책과/도서관정책 기획단)로 문의바랍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추가합격자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

질 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추가합격된 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 기쁘게도 추가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을 알아보던 도중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1차 신청기간은 12월 말까지였고, 제가 추가합격을 통보받은 시점은 1월 초였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 신청기간이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예비를 미리 받았다면 합격자

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했을텐데, 예비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신청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합격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부생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 1번에 한해서 구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추가합격생 들에게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추후 구제방법이 따로 있는지와 2차 신청기간이 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1-20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우리 부에서는 각 대학에 공문을 시행하여 '16년 12월 말까지 재학생 및 신입생 (예비합격자 포함)에게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안내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16.12월 말까지로 설정한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사전감면을 위해 소득분위 산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역산하여 정한 기간이고, 추가합격생 등 소득분위 산정을 놓치는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합격자까지 신청토록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분위 산정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거나, 추가합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의 범위 내에서 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각 대학과 협의하였습니다.

3**여군 군휴학 신청 가능여부 문의****질 의**

제가 재학기간 중에 하사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의무복무기간인 3년 동안 일반휴학이 아닌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휴학 신청이 가능할 경우 만약 학교에서 군휴학 신청을 거부한다면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신

2017-03-28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여학생이 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할 경우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73조(복학 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에 의거 군휴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1항7호에 따라 여성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3년을 군휴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입대휴학원 및 증빙서류(군입대 또는 군복무확인)를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4

군복무 중 학업병행 문의

질의

군복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군대 내에서 승인하에 온라인으로 학점은행제나 학점교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05-31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현재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학점의 인정 등) 제4호의 ‘「병역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 원격강좌 수강 후 해당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학력인정 기준 관련

질 의

2017.02.20.에 개정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외국 학제와 우리나라 학제 환산표를 보고 학생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 하였으나 표에 없는 학제를 이수한 듯합니다. 해당 학생은 초·중·고 과정이 10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대학까지 14년만에 끝냈다고 하여 본교 대학원에 진학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중·고 10년, 대학 4년을 이수한 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지원 가능한지를 질문드립니다.

회 신

2017-07-13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의 입학전형 및 학사운영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 입학자격 인정요건 및 인정여부는 해당 대학(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학력인정은 해당 국가 학교의 수업연한, 교육내용, 해당국의 교육관계법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전체 수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한 후 대학원위원회 심의 등 학칙에서 정하는 자체 절차를 거쳐 입학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관련

질 의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인 영어성적표 제출에 있어 G-TELP, TOEIC,

TOEFL 등을 허용하는 학교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9-08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학사제도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은 입시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로 외국어능력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 가능한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의 종류는 개별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2017학년도 입학전형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TOEIC, TOEFL, TEPS의 성적표를 제출하도록 하며, 충북대, 영남대, 동아대 세 곳에서 G-TELP 시험의 성적표 제출을 허용하였고, FLEX는 한국외대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시험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018학년도 입학전형 기준)

7

등록금 반환 기준 관련

질의

200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할 형편입니다. 이에 등록금을 반환받고 싶은데, 관련 법령과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2-03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반환사유〉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라.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위의 반환 기준 이외의 반환 기준은 대학 학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항으로 학교 내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8

폴리텍대학 관련 문의

질의

고등교육법 상에 폴리텍대학을 2년제나 4년제 대학으로 인정하는지, 또한 인정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1-24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서는 폴리텍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폴리텍대학(기능대학)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9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질의

대학교 현장실습을 진행하면 대학교 혹은 해당 기업에게 교육부나 정부 측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측에선 현장실습을 강행할 때마다 대학교의 점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17-07-25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귀하의 민원은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대학의 경우 현장실습을 운영함으로써 별도의 혜택을 받는 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생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기업이나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사업비를 현장실습 운영에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대학특성화사업이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사업 등이 현장실습운영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학의 현장실습 참여율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특성화(CK)사업,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0

계약학과 교육훈련비 부담 적정성 여부

질 의

계약학과 교육훈련비 관련 필요경비의 50/1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산업체 부담금을 러닝포인트로 차감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17-09-11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채용조건형),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재교육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생산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대학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산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직무훈련비용에 해당하며,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공급으로 인한 수혜자가 산업체라는 점에서 교육을 의뢰한 산업체가 필요경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원내용에서 밝혔듯이 러닝포인트는 전 직원에 지급되는 포인트이며, 참여 실적에 따라 차감되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닝포인트에서 차감하여 산업체 부담금인 필요경비의 50/100을 납부한 것은 결국 산업체 부담금을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닝포인트로 산업체 부담금을 납부한 것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의 산업체 부담금을 규정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1

대학 현장실습지원비 관련

질의

현장실습이 실질적 근로의 성격을 띠는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이 필요하고 생각하며, LINC+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 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침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회신

2017-09-25 [대학정책실 대학지원관 취업창업교육지원과]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7조(현장실습지원비)

-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장실습 지원비는 학교와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귀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장실습이 실질적 근로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최저시급 이상의 실습 지원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이 LINC+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2

사립대학교 교직원 가족수당 중복지급 문의

질 의

부부 중 A는 교육청산하 교육공무직(국민연금)이며 그 배우자 B는 사립대학 정규직 교직원(사학연금)인 경우 가족수당을 해당 근무기관에서 각각 받을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중복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사혁신처 질의내용을 검색해보니 예외적인 내용의 경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 확인해보기를 권합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등……. 인건비가 보조되는’ 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애매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단돈 1원이라도 보조되면 그 사립대학 구성원 모두 해당규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인건비가 보조되는 특정사업 해당자만 적용되는 것인지?

회 신

2016-12-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 여부(교직원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 포함)를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사립대학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가 국고사업비에서 보조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사립대학 소속직원의 임명권 관련

질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 소속직원의 임명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2016-12-2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직원의 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행하여야 합니다.

14 서울시 내 여자대학 설립 요청

질의

서울 ○○구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구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구에도 ○○여자중학교, ○○○○대학교 설립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2-0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서울시 ○○구 내 여자대학 설립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대학 신설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15

사립대학 법인의 재산과 회계 계정 관련

질 의

1. 교육용/수익용 기본재산, 보통재산에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가 통합되어 산정되는 것인가요? 맞다면 수익용기본재산을 법인과 학교 회계를 분리시켜서 나타낼 수 있나요? 틀리다면 법인이 갖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세부 현황과 계획, 학교의 기본재산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교육용기본재산은 학교와 법인이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가요?

2. 학교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그리고 수익사업회계, 일반업무회계,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재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되나요? 교육용기본재산, 수익용기본재산, 보통재산을 구분해주시고 전체 재산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 주세요!

회 신

2017-02-1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1.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교육용기본재산은 학교회계, 수익용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은 법인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에 따라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을 별표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지며, 「사립학교 시행령」 제4조제2항은 사용목적에 따라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재분류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 사용자 구분에 따라 법인용재산과 학교용재산으로 구분됩니다.

16 사립대학 교명변경 신청 관련 절차

질의

1. 사립대학교 교명변경 신청을 위한 ‘교명변경신청서’에 대한 공식 서식이 있는지요? 있다면 서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2. 사립대학의 교명 결정권자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만약 교명 결정권자가 설립자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설립자가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7-02-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교 교명변경 신청은 해당 학교법인이 교명변경사유서, 이사회 및 대학평의회의결서, 구성원(교직원, 학생회)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별도의 신청 서식은 없음)

교명변경 신청 시, 우리 부는 고등교육기관, 관계기관 등에 대해 의견조회를 하게 되며, 타 대학 등의 이견 유무, 타 대학과의 유사 교명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7 사립대학 설립자 변경 관련

질의

대학교 설립자를 어디에 등록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어디서 검색할 수 있나요? 대학재단에서 임의로 설립자를 등록 신청하는 것인가요? 가령 00대학교인 경우 이사회가 결의하면 현 이사장으로 설립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요?

회 신

2017-03-1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은 설립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설립 당초의 임원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별대학의 설립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법인이나 대학교에 문의하셔야 하며, 법인이나 대학에서 주장하는 설립자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쟁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8**명예퇴직 수당 관련****질 의**

사립학교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명예퇴직 수당 관련 재취업 시 자체규정에 명시된 반납조항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3-2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 직원의 보수, 복무 등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19 대학별 지역, 교지면적, 국가장학금 내역

질 의

대학교별 지역/땅의 면적/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6-1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대학교별 교지면적은 매년 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에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 동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확충, 교내 장학금 유지 확충)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단,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D, E 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입입학 학생 지원대학 제외)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학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현황 자료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질 의

2017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회 신

2017-06-01(행복한교육)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년 5월 17일(수) 오전 9시 ~ 2017년 6월 14일(수) 오후 6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되며, 신청기간 내 24시간 동안 신청 가능

▶ 신청대상자 : 재학생, 신입·편입·재입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21

교육용기본재산 사용료 청구 관련

질 의

대학이 보유한 교육용기본재산인 토지 중 대학부속병원에서 학생들의 실습 및 교육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임대료를 부속병원전입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6-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부속병원이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의 부속시설일 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그 외 의과대학 교육·연구·실습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장례식장 등) 운영을 위해 활용되는 교육용기본재산 면적에 대해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 규칙」 [별표1]에 따른 대여료 및 사용료 목(5300-5320-5322)으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립대학별 기본재산의 형태 및 관리 등이 상이한 바 참고하시기 바람

22 사립학교 교직원 겸직 관련 질의

질의

1. 학교법인 소속의 직원이 법인소속의 대학 부속병원과 겸직이 가능한지?
2. 보수는 법인 및 부속병원에서 겸직으로 업무비율에 따라 각 기관에서 보수로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2017-10-2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제1항에 의거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사무기구 및 직원) 제1항 :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운영과 사무 직원의 정원, 임용,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23

교지확보율 관련 질의

질의

대학의 교지확보율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 기준이 있나요?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정해져 있는 교지확보율에 대한 기준 제외

회신

2017-01-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평가과]

대학구조개혁평가에는 문의하신 교지(校地)확보율 지표는 없으나, 교육여건 항목 중 교사(校舍)확보율 지표가 있습니다. 교지기준면적은 교사건축 면적 또는 교사기준면적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교지확보율과 교사 확보율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와 제5조 및 [별표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관련

질의

유학생 유치 인증대학교 발표가 언제 나는지요? 결과를 언제 알 수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7-02-2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평가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를 2016.9월~2016.12월까지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해당 대학에 안내(2017.2.17.금)하였습니다.

2016년도 인증대학 명단은 한국 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사·복무

25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복수국적 가능 여부

질의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자로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이중국적”을 가진 자가 계속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6-12-27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복수국적자와 관련하여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제1항에서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서는 국가안보분야, 보안·기밀분야, 외교분야 등에 열거하고 있는 바, 교육공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임용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국적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적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사립대학 교원 승진규정 개정에 관한 질의

질 의

단과대학에 소속된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사전 동의나 공지·의견 수렴없이 교원 승진규정을 개정, 공표하는 것은 절차 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회 신

2016-12-2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제26조의2(대학평의위원회) 제1항에 따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심의)을 받아야 하나, 사립대학 내의 교원 승진 등 관련 규정 개정에는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해당 대학의 정관, 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7

‘대학’ 명칭사용 관련

질 의

경기꿈의대학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대학’ 표기 사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꿈의대학이란 : 경기도교육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특별 개설한 강좌를 희망선택에 의해 수강하고,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학생중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회 신

2017-03-1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1)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은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는 위와 같은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4조제2항제1호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판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도3003, 판결]

【판시사항】 [1] 구 「고등교육법」 제64조제1항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제1항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보아 ‘경기꿈의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그 설립목적이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별도의 입학절차나 조직, 학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 진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점, 무료수강을 원칙으로 하는 점, 별도의 졸업 또는 학위수여 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 법률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설립취지와 내용이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차이를 보이고, 나아가 기존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살펴볼 때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벌칙규정의 입법취지가 대학과 유사한

기관의 운영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지, 학교명칭 자체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명칭만의 사용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기꿈의대학’은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학’ 명칭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꿈의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3호는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

국립대 교수의 신분 관련

질 의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인가요? 국립대 교수를 하면서 일반 회사에 사외이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해도 된다면 그것에 관련된 법적 근거 좀 알려주세요.

회 신

2017-03-3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에 따라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함)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장은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기간의 적절성, 허가대상기업의 적합성, 그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겸직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국립대 교수의 기업회장 겸직가능 여부

질의

국립대 교수가 기업의 회장인 경우 가능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회신

2017-04-1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국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은 교육공무원(국가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관련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장은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겸임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바, 겸임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아닌 비전임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기업체의 회장직과 대학의 비전임교원직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에 의거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휴직할 경우에, 휴직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병원 또는 요양원 등 관련 시설에 부모가 꼭 입원하여야 하는지?(집에서 요양하고 있고, 통근치료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2. 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부모의 질병진단서 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4-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은「교육공무원법」 제44호(휴직) 제1항제9호에 따라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임용권자에게 간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병원, 수용소 기타 의료 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함.

간병휴직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 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간호 대상자의 진단서(의료법 제17조에 의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기타 간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행정사 자격 면제대상 관련

질 의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아닌 일반 정규직 직원이 행정사 자격 면제대상이 되나요?

회 신

2017-04-1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행정사법」 제9조(시험의 면제)에 행정사 시험 면제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정규 일반 직원은 ○○대학교병원이라는 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면제 대상 규정상의 공무원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32

국립대 교직원 연봉제 관련

질 의

국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교직원 연봉에 관한 법률 연봉을 누가 정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4-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국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자인 총장은 소속 교원 임용 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에 따라 대학 교원의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에서는 대학교원의 급여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에 따라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은 제외)에 대하여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각 대학에서는 우리 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학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6급 이하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비공무원인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호봉제 또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3

국립대 교원 징계시효 기산일 관련 질의

질의

국립대학 소속 교원인 교육공무원이 자신이 저작자가 아닌 허위 저서 1권을 교원업적평가를 위하여 연구실적으로 2010. 9월에 평가 부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평가 부서는 해당 저서를 포함한 제출 업적을 토대로 교원업적평가 절차에 따라 2013. 12월에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회신

2017-05-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바, 여기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일부 징계시효가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1.21. 99도4940), 징계시효기간의 계산은 징계의결요구일로 부터 역산하며, 일단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시효는 정지되는 바, 이때의 징계 의결요구일은 징계의결요구서가 관할 징계위원회에 도달(접수)된 때를 말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각호의 행위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라면, 비록 그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시효도과된 부분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면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의 기산점도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5.22, 선고, 89누 7368, 판결)

「2016년도 징계업무 처리요령(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기 교육훈련 성적을 임의로 변조(변조시기는 1991.1.4. 이전임이 확실하나 정확한 시기는 모름)하여 1991.8.14. 지방 소방사에서 지방소방교로 심사승진되었으나, 1997.11.20 변조사실이 적발된 경우 징계가능 여부에 대하여 해당 교육훈련성적의 조작행위가 1991.1.4. 이전에 일어난 것이 확실하다면 조작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3.1.4. 이전에 징계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징계의결요구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무 12152-594, 1997.12.1.)

본 사례의 경우 민원인께서 제시한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교원업적평가 시 허위실적을 제출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 최종 확정된 경우 허위실적 제출일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국립대 조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질의

질의

국립대학 조교가 육아휴직한 경우 휴직기간만큼 임용기간이 연장되는지(임용기간에 산입하는지) 여부와 출산휴가 시 결원 보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5-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4항에 따라 같은 규정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또한, 결원 보충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제2항에서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과 연계하지 않고 출산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후임자 보충이 불가능합니다.

35

시간강사의 정규직 전환 요구

질의

시간강사가 한 대학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규직(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6-0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대학이 위촉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므로 고용안정과 대학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업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의 예외사유에 포함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개정(10.2.4.)되어 시간강사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대학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6조(교원·조교의 자격기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초심사·전공심사·면접심사 등을 거쳐 계약제로 임용하고 있어 시간강사가 일정기간 한 대학에 재직했다고 하여 해당인을 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등을 고려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부에서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17.1.24.)한 바 있고, 국립대학(39개교) 시간강사를 위해 강의료를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시간강사 강의료 지급 시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8.57만원 이상의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사립대학의 경우 시간강사 강의료를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반영하여 대학의 자발적인 강의료 인상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6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질의

대학교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해당 학위와 채용 예정인 전공분야가 일치하지 않아도 연구실적연수로 인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회신

2017-06-0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학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졸업자(또는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연수의 합이 조교수는 4년, 부교수는 7년, 교수는 10년의 연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바, 「같은 규정」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연구실적으로 100퍼센트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 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은 위의 실적에 해당합니다.

※ 해당 학위와 대학의 채용 예정 전공분야 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실적으로 인정 예를 들어 박사학위 소지자의 석·박사 과정 재학기간이 각각 2년, 3년인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5년(2년+3년)으로 조교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격기준은 최소 기준으로 대학별로 그 요구 수준은 상이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사립대 조교 정규직화 요구

질의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되는 사립대학교 조교에 대하여 정규직화 요청 건의합니다.

회신

2017-06-0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조교를 두며, 「같은 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는 조교를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 기구 및 직원)에 따라 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대학의 정관, 학칙 등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대학은 그에 따라 임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고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과 조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 등을 감안하면 사립대 조교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에 대하여는 각 대학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교직원 등)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함.

38

사립대학 교원의 표절 저술과 교수 임용

질 의

사립대학교 교원이 표절 저술로 정교수로 승진했다면, 그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무효로 처리가 되고, 형사법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혹시 표절 저술로 인한 승진의 경우에 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7-06-1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임용권은 학교 법인에게 있는 바, 상위직급으로의 임용을 위해 심사자료로 제출된 연구실적이 표절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실적을 제외하고 심사하여 그 적격 여부를 판정할지, 해당 임용을 무효(취소)로 할지,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승진 제한을 할지에 대하여는 대학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해당 교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

사립대 교원의 기업 대표이사직 겸직 관련

질 의

사립대학교 교수 중 보수를 받고 영리목적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분이 계십니다. 대학교 총장님의 승인은 얻었고 서류상으로는 무보수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여 및 법인카드 등으로 월 최소 10~200만원 가량 우회적으로 사내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표이사직 유지가 가능한지 확인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시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17-06-28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와 교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에 따르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로 겸직하는 대학 교원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으로 지급받는 월급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 해설집(2017)」에서는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로서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에는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모두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대학교 헬스장 이용 관련

질의

○○대학교 안에 있는 헬스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7일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하기 전에 미리 말도 하지 않다가 샤워장 시설 누수검사를 한다고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샤워장은 이용 못하고 헬스장만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샤워장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누수검사 하는 기간 동안 날짜를 더 연장해주라고 했지만 운동은 할 수 있어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말하고 전화로 다른 직원에게 말했지만 ○○대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지 않고 집에 버스 타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고 에어컨으로 인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 운동과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마음대로 운영을 하니 황당합니다. 제 아는 사람도 8월 초에 등록했는데 그런 말조차 듣지 못했고 문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등록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한 설명 부족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고칠 수 있도록 전달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08-1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대학교 학생생활관에 본 민원을 이첩한 바, 학생생활관은 사전 공지 시스템 오류 및 부적절한 응대에 대하여 사과하였으며, 민원인께서 샤워장 공사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41

○○대 스포츠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

질의

○○대학교 스포츠센터 이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스포츠센터에 헬스장이 있는데 시설이 미비하여 안전상 위험한 점이 있어서 시설 개선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민원드립니다. ○○대학교 스포츠센터상에 신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여기다 남기는 점 양해바랍니다.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하는데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는 헬스기구에 안전 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동자가 운동하다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놓칠 시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프레스 랙이라는 시설에 안전 바 설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헬스를 할 수 있는 중량바벨이 있는데 중량바벨이 낙후되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량바벨을 20kg 올림픽바 중량바벨로 3개 이상은 새로 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7-08-3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대학교에 본 민원을 이첩한 바, ○○대학교 스포츠센터는 2015년부터 노후상태 및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장비교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벤치프레스 또한 교체 예정(9월중)으로 교체 시 안전 바가 설치된 제품으로 교체하고, 기타 중량바벨을 포함한 노후 기구도 민원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42

지방공무원 계약직 경력환산 관련

질의

지방공무원 계약직 마감으로 약 5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본 대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2015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 지방공무원 계약직을 아래 (1)을 적용하여 5할 경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내 민원인은 이전 직장에서 지방공무원 계약직 경력을 10할 적용받아 (2)의 경력환산을 10할 적용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계약직을 아래(1), (2) 중 어떤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예1) [별표1] 3. 유사경력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5할)
- (예2) [별표1]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10할)

회신

2017-09-0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기준, 2. 교원 외의 공무원경력(환산율 8~10할)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은 10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2013.12.12.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계약직 마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획정 시 10할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3. 유사경력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제가 졸업한 대학원의 학칙에서는 수업연한을 2년으로 규정해두었고, 최대연한을 3년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최소수업연한인 2년을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을 하였습니다. 저는 3학기에 수업을 몰아서 들으며 졸업성적을 이수하고 나머지 한 학기는 해당 대학원에서 실험과 논문작성 등의 수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3학기 동안만 들어서 성적증명서에 수학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나머지 한 학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저수업연한이라는 의미 자체가 2년간 등록하여 수학하여야 해당학위를 이수할 수 있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만 인정이 되어 제가 석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고 수학한 2년 중 6개월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신

2017-09-11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2] 3. 유사 경력 나. 연구경력 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경력 인정대학경력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인 경우 10할이 인정되며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한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졸업한 대학원의 학칙으로 최저수업연한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기간 대학원 학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학한 연한으로 보고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4

교육공무원 초임호봉 확정 관련 질의

질의

교육공무원 초임호봉 확정 시 1.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인정여부, 2. 육아휴직 경력기간 인정범위, 3. 연수휴직 기간 중 대학원 졸업 시 석·박사 호봉 인정여부, 4. 연수휴직기간 중 시간강사로 강의한 경우 경력인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9-1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1.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의 경우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2] 2. 기타경력환산율 상향인정기준, 2)대학교원의 상통직 경력, 바.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의 ‘대학 졸업 후의 경력으로 임용 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산학협력단에서 상근한 경력이 채용예정인 분야와 상통(동일)분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경력 중 8할에서 10할 까지 교육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통여부(동일분야)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하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대학)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재직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에 따르면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최초 1년 이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한 이후 다시 2년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초 2개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은 10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45호(2017.9.5.))」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수휴직의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 혁신처 예규 제45호 (2017.9.5.))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하나, 대학원 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력의 경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 - 나. 연구경력 - 4)대학원에서 학위 취득경력’에 해당하므로 경력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하되,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박사의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찬가지로 연수휴직 중 타 대학에 시간강사로 강의를 한 경우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 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 ‘3. 유사경력 - 가. 강사 등 경력 - 3) 대학 시간강사 경력’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 10할까지 인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입제도

45

윤리과목 수능 필수과목 건의

질의

윤리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학문인데, 필수과목이 아니라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근본을 부강하게 하고, 학생들의 인간성 교육을 위해서 윤리과목을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윤리과목의 수능과목 필수지정이라고 사료합니다.

회 신

2017-01-24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특정 교과목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경은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정책연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하여야 할 사항으로 즉각 수용하여 반영하기가 어려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우리 부의 교육정책에 귀하게 참고하여 더욱더 좋은 정책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

야간 대학 입학 문의

질 의

재직자특별전형 외 야간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궁금합니다.

회 신

2017-05-1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 34조에 따라 각 대학의 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각 대학 입학전형에 있어서 모집분야, 입학자격, 전형방법, 전형기간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사이트를 통해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야’, ‘야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야간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의 전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전형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7 대학입학 취소 처분 근거

질 의

얼마 전 전국을 시끄럽게 하였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의 정유라에 대한 대학입학 취소처분과 고교졸업 취소처분을 행한 법적 근거를 찾아보던 중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입학 취소처분과 졸업 취소처분을 행할 수 있는 조문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법적 근거는 어느 법을 적용한 것인지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회 신

2017-05-19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제1항*에 따라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입시 부정이 확인되어 시정·변경(입학허가 취소)을 명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①항 :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48 대입정보포털 관련 문의

질 의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의 정보 업데이트가 늦고, 에러가 잦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신

2017-06-22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매 학년도별 변경되는 대입정보를 수험생에게 혼란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대입 정보포털(www.adiga.kr)’에서는 당해년도 수험생 기준의 대입정보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고1~2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파일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현재 2019학년도 시행계획까지 제공)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대학별) :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 확정·발표

대입정보포털의 정보는 ‘대학별 자료의 탑재, 해당업무 담당자의 확인, 대입정보 포털 업데이트’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학의 자료 탑재 후 전체 대학의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부는 확인작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는 대입정보포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입 정보포털 서비스 이용 중 오류 발생 시에는 대입정보포털 고객센터(02-6919-3800)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49

입학사정관 보수 지급 관련

질의

고등학교에서 교원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게 강의를 요청할 경우에 고교에서 입학사정관의 보수 지급이 가능한지요?

회 신

2017-06-23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입학사정관이 현장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출장비 포함)은 원칙적으로 대학 부담으로 하며 고등학교에서 유·무형의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16.8월에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입학사정관과 일부 고교와의 유착 등 부정·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에 고교에서 교원과 학생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에게 강의 요청 시에도 원칙적으로 대학이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50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질의

2021년도 이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과 체류일수 등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2017-09-18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현재 대학별로 상이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2021학년도 이후부터 ①학생 이수기간은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 3년 이상(연속/비연속 무관)을, 체류기간은 ②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③부모(모두)의 경우 학생 이수기간의 2/3 이상으로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 위 사항은 2014년에 발표한 ‘201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부터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후 발표되는 각 대학 모집요강에서 사전 예고 중임

이 중 해외 체류일수 조건은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3분의 2 이상을, 학생 본인은 4분의 3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해외 재학기간의 각각의 1년이라 함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대입전형 기본사항) 즉,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년으로 기준하여 각 년도마다 학생은 4분의 3 이상을, 부모님은 3분의 2 이상으로 충족하셔야 하며, 기본 지원자격이 3년 이기에 기본적으로 1년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체류조건을 3년 이상 반복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해외근무/사업/영업 기간 및 학생의 해외 학교 재학기간(고교 1개년 이상 포함)이 3년(1,095일) 이상 기준을 충족하셔야 함을 알려 드리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제시한 기준 외에 대학별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강화된 기준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 사항’ 등 대입관련 정보는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 대학입학정보 > 대입자료실’ 에서 ‘기본사항’, ‘재외국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1

기초수급자 대입전형료 면제 관련 문의

질의

2018학년도 대학수시 전형에 지원한 학생 학부모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가구입니다. 6군데 수시전형을 냈다 보니 비용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학별로 수급자 학생의 원서비 환불 규정이 다른 것 같아 도움을 받고자 민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어떤 대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환불된다고 하고 또 다른

대학에서는 그런 규정은 아예 없다고 하네요. 혹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 신

2017-09-25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에 따라 대학은 전형료 면제 및 감액의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기초수급자가구의 전형료 면제에 관한 건은 대학자율 사항으로 정하여 운영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52

세월호 침몰 관련 생존학생에 대한 특례 입학

질 의

세월호 침몰 사건 생존학생에게 왜 특례입학을 지원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9-26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세월호 특별전형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에 따라 대학이 정원 외로 피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위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 등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3

아포스티유 서류제출 관련

질의

현재 대학교들은 해외 학생의 경우 아포스티유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당되는 해외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공문서이고 사설 업체를 통해 발급을 받으면 7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대학 입학 시에도 국내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회신

2017-10-30 [대학정책실 대학정책관 대입제도과]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 전형의 성격, 모집단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수시, 정시 모집인원, 전형유형, 지원자격, 학생 선발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학에서는 그동안 재외국민 전형 등에 여러 가지 편법 사례들이 있어 해외에서 이수한 교육과정, 활동 등의 검증 내실화를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원방법, 제출서류 등은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전달하여 향후 입학전형계획 수립 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수시모집 대학의 복수지원 허용범위

질 의

대학입시에 수시모집 대학의 복수지원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 신

2016-07-01(행복한교육) [대입제도과]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55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기준

질 의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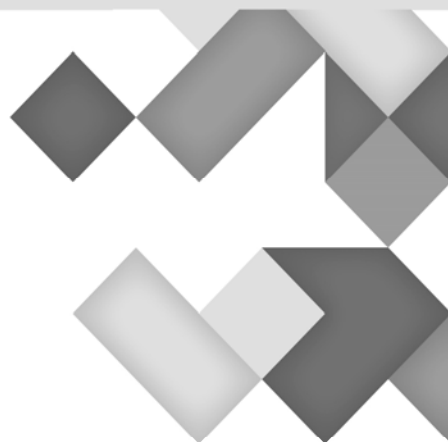
2016-07-01(행복한교육) [대입제도과]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소재지, 재학기간, 학생 거주지, 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합니다.

IV

교육안전정보



■ 학생안전

1 아동 안전교육 관련

질의

교육부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아동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소속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1항에 의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다만, 시설장은 이용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 이용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확인은 관련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통해 확인 가능함.”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 물어보니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하나요? 학교에서 받는 안전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중복되어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7-03-09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우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특히,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는 학교 안전교육의 세부기준이 나오고 있으며, 제3조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을 아동복지센터에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통학차량 등록 관련

질 의

초등학교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십시일반 자비를 내어 통학차량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 1) 학교에서 ‘학교장’ 명의의 등록을 거부(거절)할 수 있나요?
- 2) 만약 ‘학교장’이 거부할 경우 ‘학부모회장’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회 신

2017-03-31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 부담으로 학생 편의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경찰청 의견)

다만, 학생 안전확보를 위해서 관련 규정에 맞는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미세먼지 관련 기준 및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

질 의

오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야외수업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04-03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우리 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으며, 미세먼지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준수 철저, 관리자(학교장 등) 연수과정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현장 착근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경보발령 시 마스크 착용, 실외수업 단축 또는 금지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기준강화 관련 사항은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으로, 부처 협의 시 기준강화와 관련한 귀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의무 설치 관련 사항은 각 시·도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고, 품질·효과 등이 객관적·과학적으로 보장된 제품이 있다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공기청정기 필터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오염 누적, 공영매체에서 다루었듯이 공기정화방식에 따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교 안전점검 관련

질의

시특법에 정의되어 있는 안전점검을 굳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로 법에 명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 신

2017-04-14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은 이러한 학교안전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에서는 ‘안전점검’의 정의 규정만을 준용함으로써 그 개념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있어 시설물 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미세먼지 관련 기준 및 인식제고

질 의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환경부보다 먼저 국제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대응을 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도 얻고, 아이들도 지켜주는 멋진 대한민국 교육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민원을 넣어 봅니다. 교육부 만이라도 WHO 미세먼지 기준 선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가요?

회 신

2017-05-08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우리 부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미세먼지 대응역량과 대응수단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매뉴얼보다 강화하여 당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이상부터 야외활동 및 실외수업을 자제하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 및 배포

(17.4월)하였고, 매뉴얼에 따라 학교별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준수 철저,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 학생 안전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학교장 등) 대상 안전 연수 시 미세먼지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협력하여 교육청, 학교 담당자 대상 순회교육을 실시 (4.17.~5.8)하는 등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인식 제고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기준강화 관련 사항은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처협의 시 기준강화와 관련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실 외기 창문을 이용한 환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통한 저감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각 교실마다 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각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기 설치를 위한 효율성, 이에 따른 예산, 기기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사후관리 방안, 기기 가동에 따른 후속조치(기기 가동 소음, 환기부족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 등과 관련한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선은 부득이하게 환기를 위한 보조설비 설치가 필요한 학교(또는 교실)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제거효율 및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오존주의보 발령 관련

질 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처럼 오존주의보 발령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여름철 냉방기 사용지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알려주십시오.

회 신

2017-05-24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우리 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오존 관련 교육자료를 각급학교에 안내하여 오존경보 발령 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냉방기 사용은 폭염, 오존 등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 관련

질 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나 상담비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다고 하는데 피해학생이 먼저 치료비 등을 지불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청구하는 것인가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7-06-23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치료비용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려면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폭력사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학교장의 통지가 이뤄진 후, 학교 또는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진단서, ②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③약제비계산서 영수증 원본(병원 처방전 첨부), ④사고학생 주민등록등본(청구금액 50만원 미만 생략가능), ⑤청구인 통장사본
※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류 추가 요구 가능

8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 연혁

질의

현재 응급구조와 관련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내용 중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내용이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최초 시행된 2016.3.15.부터 포함되었는지, 그 이전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곳에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 2016.3.15. 이전부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언제부터 포함

되었는지, 어느 교과목에 포함되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이 교과목에 포함된 연혁에 관하여 2009년부터는 초등학생, 2010년부터는 중, 고등학교 보건교과목에 포함된 사실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11-21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이 포함된 시기는 고시가 제정된 때인 '16년 3월 15일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련 내용이 교과목에 반영된 시기는 「2015 개정 보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15.9.23)」부터이며, 중고등학교 보건, 고등학교 체육과목 (신체활동 예시로 명시)에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교과목에 반영된 시기는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08-148호, '08.9.11.)부터 적용되었으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초등은 보건교육으로, 중등은 보건과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교육정보

9

사이버대학원 중복학적 관련

질의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자격증 관련하여 본 대학원 재학과 동시에 ○○사이버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의견으로 본 대학원의 학점인정이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위한 입학이라고 합니다. 본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00사이버대학교(정규과정/4학기제/3학기편입)로 입학할 때, 첫째, 2중학적이 되는데 특수대학원이지만 가능한지요? 둘째, 가능하다면 저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저희 학교 학생으로 문제없이 졸업까지 진행해도 되는지요?)

회신

2016-12-13 [교육안전정보국 이터닝과]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은 중복 학적을 인정하지만, 귀하께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은 미술상담학과 단일학과만 존재하며,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 아닌 심리·미술치료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EBSi 수능방송교재 가격 관련 문의

질의

EBSi 수능방송의 교재(수능특강 등)가 타교재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회신

2017-10-30 [교육안전정보국 이터닝과]

2010년 교육부와 EBS는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수능연계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EBS에서는 학생들의 교재 구입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가격 인하 및 동결 등(타 출판사 유사교재 평균 정가 대비 약 42% 수준)을 추진하며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 관련

질 의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나이스(neis) 프로그램에 반영 요청드립니다.

회 신

2017-01-16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우리 부서는 나이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총괄부서로, 나이스를 통해 활용되고 있는 인사, 급여 등 전체 256개 업무에 대한 관련 법 개정 시 정확한 이해 및 시스템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소관부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에 근거하여 나이스 반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과의 안내를 받아 나이스에 적용 (1.13.)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당규정 개정에 따른 내역은 지방교육자치과의 안내(1.16.)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나이스 적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

증명서 발급 및 수신 관련

질 의

전화상으로 수업료 영수증 등 각종 증명서를 받을 수 없나요?

회신

2017-04-05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본인 신원확인 후 발급하는 서류로 발급은 전화신청 후 자녀가 행정실에서 찾아가는 방법과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은 우선 ‘나이스 학부모서비스(<http://par.goe.go.kr>)’에 회원가입 및 자녀등록 후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http://hdu.goe.go.kr>)’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전화신청 후 팩스 수신은 전화상으로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에서 안내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관련

질의

나이스 홈에듀서비스에 오타있어요. 1. 온라인발급 민원 클릭하고 발급민원안내 클릭하면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뜨는데 ‘교육비납입증명서’라고 나오네요. 교육비납입증명서로 수정바랍니다. 2. 과목합격증명서 부분에 과목합격증명서는 홈에듀민원서비스와 무인발급서비스는 지원안하고 과목합격증명서(전체)만 지원하는데 잘못 써 있네요. 수정바랍니다. 3. 온라인민원정보에 들어가서 발급 기준연도 밑에 보면 검정고시 부분이 있는데 용어 개정이 예전에 됐는데 불구하고 용어가 안바뀌어있네요. 용어 때문에 헷갈릴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 자격→초등학교 졸업 학력, 고등학교 입학 자격→중학교 졸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자격→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9-05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정보화과]

1. 온라인 발급 민원명 오자 수정하였으며, 발급 가능 민원 목록도 정정 하였습니다.
2. 검정고시 관련 용어의 현행화 귀하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홈에듀 민원의 메뉴명 및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이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보다 편리하게 홈에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육시설**

14

국립대 기자재 구입 관련

질 의

교육부 예산으로 연구용 워크스테이션(PC)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7-01-06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대학에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대학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하나인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교수 연구용 기자재보다는 ‘학생의 기본적인 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을 목적으로 대학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컴퓨터의 경우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예산집행 지침에 의거 공용실습실에 설치되고 실습(교육과정) 수업에 활용되는 컴퓨터는 집행 가능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 워크스테이션 구입 가능 여부는 해당 대학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위한 기자재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 범위

질의

학교부지 내에 교직원 공동주택을 별도 증축하려고 합니다.

1. 사용목적 : 교직원의 주거
2. 대지위치 : OO중학교 학교부지 내
3. 규 모
 - 가. 건물수 : 1개동
 - 나. 층수 : 지상 4층
 - 다. 세대수 : 30세대
 - 라. 건축면적 : 364m^2
 - 마. 연면적 : $1,456\text{m}^2$
 - 바. 기타 : 건축법 용도별 건축물의 공동주택(연립주택)에 해당 건물은 학교부지 내에 이뤄지는 건축행위이므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교육지원청에서 허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자체 또는 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02-08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관련 법 적용범위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에 명시되어 있으나,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건물에 대한 적용여부는 해당 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대학 학교 기숙사 관련

질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는 방학 중 기숙사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퇴사를 하면 개강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기숙사 청소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숙사 입사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침대 밑을 확인하는 데 1999년도 신문, 청바지, 온갖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국립대인 만큼 분명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을텐데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민원 요청합니다.

회신

2017-03-10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대학교 생활관에서는 입사생 퇴사 후 매학기 방학 중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40여 명의 인원이 일주일 동안 대대적으로 청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실 청소 시 침대 서랍을 제거 후 청소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일부 서랍 분리가 안되는 침대 등이 청소가 안 된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입사생이 모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향후 여름방학 중에 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청소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깨끗한 면학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학교시설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 1) 학교의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의 제한은 무엇인가요?
- 2) 학교의 수직, 수평 증축 시 2층으로 1,000㎡ 미만이면 내진보강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

2017-03-15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 1항5호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제32조제2항제6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에 의거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이란 [별표10]에 따른 지진구역 I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별표10]지진구역 I (강원도 북부 일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며, [별표11]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에서 학교는 규모의 제한이 없이 중요도 1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서 내진 보강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으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4항에 의하면 대상시설은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에 의해 “학교시설 중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모에 따른 구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2) 학교의 수직, 수평 증축 시 2층으로 1,000㎡ 미만이면 내진보강”을 해야 하며,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민원인께서 기술하신 내용에 보태어 내진보강을 위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므로 “학교의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의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기숙사 입사요건 관련

질 의

1. 기숙사 입사 전 건강진단서는 어느 범위까지 검사를 해야 하는지?(예, 결핵, B형 간염, 전염성피부염 등)
2.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항원이 양성) 입사 허용이 가능 여부는 어떻게(활동성 또는 비활동성) 판단합니까?

회 신

2017-03-15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대학교 생활관(기숙사)에서 결핵 등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건강진단서 등을 대학에서 규정하는 항목들로 제출을 받고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검진 항목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교실 출입문 유효폭에 대한 벌칙규정 여부

질 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교실 출입문은 유효폭 90cm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BF인증을 확보하였으나 교실 출입문의 유효폭이 90cm 미만의 경우 벌칙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4-24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학교 교실 출입문 규격 미충족에 따른 벌칙이 명시된 관련법은 없으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설주 등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내진성능용역의 책임기술자 자격 관련

질의

진단용역과 함께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과 관련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7-05-04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때 내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이 가능한 “책임기술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민원인께서 국토부에 질의하여 확인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의해 수행하는 내진 성능평가”는 “시특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수행하는 내진평가”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특법을 준용하여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는 “책임기술자”가 수행가능하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에서는 기준에서 정한 “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21

재해취약시설 점검 관련

질의

교육부는 여름철 재해취약시설로 기숙사, 합숙소, 초·중·고 과학실, 초·중·고 실습실을 지정하였습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주1회 학교자체 점검하며, 특히 고등학교의 재해취약시설은 교육지원청으로 주1회 점검을 강제화하였습니다. 현재, 교육 지원청은 안전점검의 전문인력이 없이, 시설과에서 기존의 시설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에서 재해취약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알고 싶고, 안전점검에 필요한 인원 충원을 건의드립니다.

회신

2017-05-12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재해취약시설 지정 관리의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으로써, 법적으로 재해취약시설 지정 대상시설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대상 시설의 규모, 상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우리 부에서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상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계절별 재해취약시설 지정, 관리 개선방안」 알림 및 이행 요청(16.8.2. 공문 시행)
또한, 재해취약시설의 점검에 따른 인원 확충 등은 해당 기관의 업무분장에 의한 성격으로 기관 인적 구성 등에 따라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기관 내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증축 시 지자체 승인 여부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학교증축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학교 내에서의 증축의 경우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거 교육감이 승인하고 시군구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증축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시군구(또는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법이나 특별법이나 모두 건축법보다 상위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학교 증축의 경우는 시군구 개발제한구역 담당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교육청 승인을 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학교 증축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5-31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는 의제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법의 해당사항에 대한 결정은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를 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은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같은 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에 의거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시 신고 또는 허가 세부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

○○대 도서관 냉방기 관련

질 의

○○대 도서관 1층은 일반인 사용 가능하고 2층부터는 학생만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1층은 에어컨을 너무 약하게 해서 너무 덥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인데 2층부터는 너무 시원합니다. 1층도 2층, 3층하고 똑같이 해서 차별 안했으면 합니다.

회 신

2017-07-07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대학교에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되, 도서관 및 실험실 등은 예외적으로 자체위원회 회의에서 적정 온도를 25~26℃로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7월 현재 도서관 열람실의 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1층 25.5℃, 2층 25.8℃로 실내온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온도관리로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대학교 기숙사 의무식 관련

질 의

이번 2학기에 복학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숙사 의무식으로 기숙사와 식비를 끼워팔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식비를 무조건 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식당에서 밥을 무조건

먹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1일 3식 기준으로 기숙사비와 함께 식비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 신

2017-08-16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대학교 ○○캠퍼스에서는 2016년 기숙사 생활관 의무식을 자유식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운영업체의 적자 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7년에 다시 다른 운영업체를 모색하여 부분 의무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월~금(2식)).

○○대학교에서는 식당을 운영해 주기를 바라는 일부 학생과 의무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학생이 병존하는 상황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2013년과 2016년에 자유식을 시도하였으나 운영업체의 결손누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합니다.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사소통에 노력하고 여러 대체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겠으며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유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25

사립대학교 민자사업 관련 절차 문의

질 의

건명 : 대학교 교내 부지 내 민자유치사업 관련

내용 : 대학교 교내 부지 내 100% 민자유치로 학생생활관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에 별도의 교육부의승인을 득하여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또한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면 그에 따른 방법 등을 질의합니다.

회 신

2017-11-06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자사업 추진 시 민자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사전 검토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1항에 따라 재산 관리방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의무의 부담(BTL), 권리의 포기(BTO))

※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된 재산관리방안 허가신청에 대하여 민자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재정, 대학발전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6

시설안전 관련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질 의

근래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드물게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인 중앙부처 교육부를 칭찬합니다. 통상 소관을 따지며 책임 전가를 하기에 급한 것이 대한민국의 관가, 특히 중앙, 지방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현실이요. 실상임을 볼 때, 그나마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인 사례라 여겨 책임있는 중앙부처로 교육부를 칭찬합니다. 교육부의 분발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회 신

2017-11-12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우리 부에서는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지정된 교육연구시설의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법적 의무점검을 시행토록 시·도교육청 및 국립대 등의 해당기관에 안내 하였습니다.

이는 강화된 시설물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아울러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함이라고 판단되며, 우리 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7

학교시설사업 시행 관련

질의

학교시설사업 시행 관련한 시행절차와 관련법은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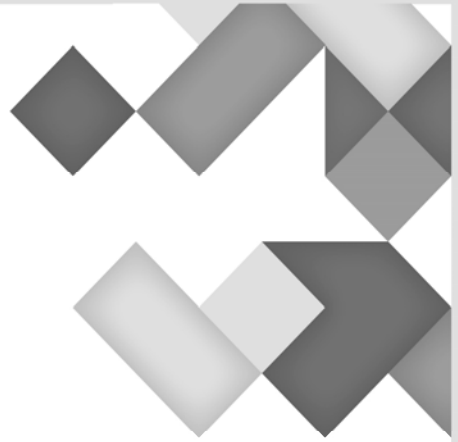
회신

2017-11-16 [교육안전정보국 교육시설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르면 관련법 제5조와 관련된 타 법들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의 처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V

평생교육



■ 평생교육

1

평생교육원 이중등록 관련

질 의

제가 올해 1학기 학점은행 평생교육원을 다니고, 2학기 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 다니지 않다가 일반 대학교에 합격하여, 내년에 국립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대학교는 이중등록이 금지되어 있고 만약 이중등록을 하게 된다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자퇴하고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6-12-1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학점은행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으로 대학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평생교육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아대상 과외교습의 불법성 여부

질 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파트에서 영어 그룹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고 운영 중입니다. 7세 아동의 학부모로부터 교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왔는데요. 유치부 학생의 경우에는 교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찾다가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 신

2016-12-2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과외 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시험준비생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며 초등학교 입학에 입학시험이 요구되지도 않으므로 유아를 시험 준비생으로 볼 수도 없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행위는 현행 학원법상 과외교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과외교습은 지도·감독의 대상이 아니며 학원법상 불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

질 의

대구 지역에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정부 관련기관이 있나요?

회 신

2017-02-0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점은행제 기관 중 정부 관련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대구 및 경북 지역에 위치한 정부 관련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기관은 공군방공포병학교, 구미시평생교육원,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세 곳입니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알리미 사이트 (<http://www.cbinfo.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접속하여 기관 검색을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독서실 성인 교습 관련

질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등록된 독서실 사업 관련하여 교과부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지침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성인 학습자가 독서실을 이용할 경우 교습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문의 2) 성인에 대한 권장가가 있다면, 어떠한 관련법과 정책을 근거로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2-1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은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주된 대상이고 성인이 주된 대상이 아닌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을 성인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독서실을 이용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학생과 차별화된 교습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교습비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교육비에 대한 규제대상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독서실의 성인에 대해서는 교습비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재직자특별전형 관련

질의

대학교 입학전형 중에 재직자특별전형을 만든 법적 취지가 무엇인가요?

회신

2017-02-2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입니다.

- ① 일반고 재학 중 1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③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④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사람

이는 직업교육의 활성화와 우수 현장 기술인력 양성의 목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선취업 후진학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임을 알려 드립니다.

6

K-MOOC와 평생학습계좌

질의

K-MOOC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수강과목 리스트들 보면 자격증에 필요한 이수과목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예로 강좌목록 중에 ‘사회복지정책론(○○대)’이라는 강좌명을 보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처럼 학은제 및 사이버대에서 유료로 신청하지 않고도 향후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과목들을 신설해서 이수한 뒤에 수료증을 받아 자격증(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산업인력공단에 올라와 있는 국가기술 및 국가자격시험을 말함.) 발급에 대체될 수 있는지와 이 수료한 것들을 평생학습계좌제에 연계할지 이 점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회신

2017-03-01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K-MOOC는 대학의 우수한 강좌를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로 해당 강좌를 수강하여도 학점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K-MOOC 강좌 이수를 통한 자격증 발급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편, K-MOOC를 통한 학습과정 이수내역은 동의받은 학습자에 한하여 평생학습계좌제에 자동연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17. 3월~)

7

학원강사 자격 문의

질의

최종학력이 고졸(대학 중퇴, 의예과)이나, 15년이상 과외교습자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학원강사로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회신

2017-03-2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2004.6.5.개정 이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4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2004.6.5.)되면서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강사는 현재 학원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2004년 이전에 이미 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하려는 부문에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을 증명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제6호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유권해석 요청

질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사학위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졸업한 사람이 받는 학사학위(「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와 같은 수준의 학사학위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03-2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학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9

독학사 시험 및 학위제 관련

질의

독학사 시험 1단계는 합격하지 않고, 2단계 6과목과 3단계 6과목을 합격하는 경우 학력이 고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단계와 3단계 합격을 합쳐서 대학 2학년 수료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해주나요?

회신

2017-04-1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에 합격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4과정인 종합시험의 응시조건으로 1~3과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할 때, 4과정 합격 시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일한 학력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3과정 합격 시 특정 수준의 학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일정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효력의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별표3에 따라 독학시험의 각 과정은 학점은행제에서 4~5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전문학사의 경우 80학점 이상) 전문학사 학위 수여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됩니다.

10

학원 및 교습소 명칭 표시 관련

질의

1. 기존의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소 이름을 표기할 때 상호/교습하는 과목/ 교습소로 표기를 하여 ‘○○○ 음악 교습소’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가요?
2. 학원 역시 기존 학원법에 따르면 상호/학원 을 표기하여 ‘○○○학원’으로 학원명을 지어야 하며 그 외 아카데미 학교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정상적인 학원 혹은 교습소 표기와 / 잘못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할 수 있는지요 예1. ○○○○아카데미/○○○국어교습소 , 예2. ○○○ 국어 아카데미/○○○국어교습소 이렇듯 학원에 신고된 교습소 명칭과 신고 안된 아카데미 이름을 공용 표기 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7-05-02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고 명시하고, 동조 제2항에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학원’이나 ‘교습소’ 외에 다른 명칭 표시 및 공용 표시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17조(행정처분)에 따라 등록말소 및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1

성인 대상 교육기관 자격 문의

질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고졸학력이거나 대학교 휴학생·대학교 중퇴 학력일 경우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훈련기관이나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강사를 할 수 있나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학력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문의를 해봅니다.

회신

2017-05-19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명시한 바, 학원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은,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중 제3호에서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 중 제3호에서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서 제9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따라서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12

대학시설을 활용한 캠프의 학원법 위반 여부

질의

본교는 고등학교로서 법인 내에 대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험(생명과학 관련)할 수 없는 것을 법인 내 대학에서 여름방학기간 중 4일간 실험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캠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인 내 대학의 실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4일간만 시행되는 1회성 행사입니다. 위 사항이 학원법을 위배하였거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시행된 ‘방학이용 불법·편법 학생대상 교습 자제 협조 요청’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2017-07-1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이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반복으로 교습일수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않더라도 동일·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 과정의 반복으로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학원법 제2조의 교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운영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3

학점은행제와 공공기관 고졸 채용

질 의

현재 저는 고졸자 신분으로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 기관을 통해 몇 과목 수료와 더불어 학점 인정 자격증 취득을 하여 학점은행 사이트에서 학습자등록을 하고 학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학점은행 학습자등록을 한 상태에서도 고졸 신분으로서 채용될 수 있는 건가요?

회 신

2017-08-24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공공기관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따르면 고졸자는 고교졸업예정자 및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를 포함합니다.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대학 재학 중이어도 학위가 없는 학습자를 고졸자로 포함시킨 것으로 볼 때,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도 학위 취득자가 아니라면 고졸자로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4

법정공휴일의 교습비 등 반환기준 적용 여부

질의

통상 학원 등의 교습비는 월단위로 납부하고 있으나, 법정공휴일로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교습비의 적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있어 적합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보충교습을 실시하거나,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만큼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하여 교습비를 반환해야 함

을설) 법정공휴일은 '학원법 18조 및 시행령 18조'의 교습비 반환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교습이나 교습비 반환의무 없음

병설) 교습자와 학습자가 사전에 약정한 내용이나, 당사자 간 협의 등 자율에 의함

회신

2017-09-05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습비 등 반환사유

1.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위 학원법상 반환규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습자에게 발생한 원인으로 학습자가 교습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동안 지급했던 교습비 등을 반환받음으로써 학습자의 경제적인 손해를 방지 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법정공휴일에 교습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습자에게 발생한 원인으로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자율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1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관련

질 의

평교원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 질의올립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사이버·원격) 대학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안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9-13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의 종류를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로 규정하였습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 부설로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로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6

정보교육을 위한 학원 인허가 관련

질 의

내년부터 각급학교에서 확대 시행되는 코딩교육(정보교과)에 대한 학원 프렌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딩을 포함한 정보교과의 내용으로 교재를 보습학원에 공급하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몇, 몇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보니 코딩교육을 학원에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종의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지 답이 각 지역 청마다 다릅니다. 입시나 보습학원에서 지금 가능하다는 답변, 내년부터는 보습에서 가능하다는 답변, 기타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답변 등 답변이 각 지역 청별로 좀 다릅니다. 하나의 법과 시행령에 따라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여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 신

2017-09-27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제2항에 따르면,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실과’ 교과에, 중학교의 경우 ‘정보’ 교과에 포함되어 시행 예정인 바, 초등학교의 ‘실과’ 및 중·고등학교의 ‘정보’ 교과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는 학원법 시행령상 ‘보통교과’ 계열인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및 논술’에 해당되며,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는 바, 실습(실기)이 필요한 경우 사·도조례에 따른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과’나 ‘정보’ 교과가 아닌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된 교습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유사하거나 교습내용이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이 없어 ‘기타’계열의 교습과정으로 등록·운영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교육이 2015 개정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단계적 시행 예정이나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바, 시행 전이라고 할지라도 ‘실과’나 ‘정보’ 교습과목은 ‘보통교과 교습과정’(단, 실기가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 충족)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이 주된 교습내용인 경우 ‘기타 과정’으로 등록·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학원법 관련 질의 회신 지침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부할 예정이오니 향후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7

평생교육 정책 관련 문의

질의

우리나라 평생교육 정책(평생교육진흥법, 계획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회신

2017-10-16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 관련법으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을 실행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4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8

치료교육으로 학원설립 가능 여부

질 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을 교습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2017.5.25.) (구)「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외하고, 전문치료사가 치료지원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에서 시기능훈련을 특수교육으로 보아 학원설립을 했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시각기능을 개선시키는 훈련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원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17-10-18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07.5.25.)되고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특수학교에서 교원이 담당하던 ‘치료교육’을, 의료기사법의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을 가진 자가 ‘치료지원’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11.10.25.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에서도 교습과정에서 ‘치료교육’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감각과 신체 기능을 증진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재활’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교육’은 학원 등록이 불가하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만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 직업교육

19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관련

질의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 3년간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법이나 규정을 찾을 수가 없어 이것에 대해 문의합니다. 처음 진로를 선택해서 마이스터고에 입학했지만 중도에 진로를 변경하여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법이나 규정
2. 졸업 직후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
3. 마이스터고에 상급학교(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체육특기생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2016-12-01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1.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대학진학이 불가능하다는 관련 법이나 규정
 - 마이스터고 졸업생도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을 규제하는 법령은 있지 않습니다.
2. 졸업 직후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벌칙이나 처벌규정이 있는지 여부
 - 앞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대학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재학생에게 학비면제, 기숙사비, 식비감면 등 상당한 재정 및 장학지원 등을 하고 있는 바, 개별학교의 학칙 등에 지원비 환수규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마이스터고에 상급학교(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체육특기생 선발이 가능한지 여부
 - 마이스터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체육특기생을 모집하지는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와 구제 방법

질의

1. 실습생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 안됨)
2. 실습업체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 2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은 누가하고, 어디에 신고하여 처벌될 수 있나요?
3. 실습업체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는 준수하였으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7-01-25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16.8.4 시행)을 통해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의무화(제9조1항), 현장실습시간과 휴일·야간 실습을 엄격히 제한하고(제9조의 2), 위반 시 과태료(제27조) 및 벌칙조항(제26조)을 신설하여 현장실습생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제9조의2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는 동법 제26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지급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연장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은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시 3자(학교, 기업, 학생)가 합의한 내용대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법(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를 통하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움(☎ 1644-3119)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단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단위 학교나 교육청 담당자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1

현장실습 시의 ‘휴일’에 대한 개념

질 의

1. 특성화고교생의 현장실습의 경우 일요일, 토요일무일, 공휴일 등에 대한 휴일의 해석과 범위는?
2. 특성화고교생의 3학년 2학기 중(졸업 전) 취업을 약정한 현장실습(정식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촉진법상의 휴일 근로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

회 신

2017-06-29 [평생직업교육국 직업교육정책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제2항의 ‘휴일’은 일반적인 공휴일(토, 일요일)과 달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0조상의 휴일과 같은 개념으로 취업규칙*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법정휴일)로 판단됩니다.

*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

22

NCS학습모듈 저작물 관련

질의

NCS학습모듈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 및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7-02-20 [평생직업교육국 인재직무능력정책과]

NCS학습모듈은 NCS능력단위를 교육 및 직업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로 고교, 전문대학, 대학, 훈련기관, 기업체 등에서 NCS기반 교육과정을 용이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NCS학습모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처를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다만 NCS학습모듈에는 국가(교육부)가 저작 재산권 일체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출처가 표기되어 있는 도표, 사진, 삽화,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저작물의 변형, 복제, 공연, 배포, 공중 송신 등과 이러한 저작물을 활용한 2차 저작물의 생성을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중 서점에 유통 중인 NCS학습모듈 관련 교재 등에 대해서는 현황 등을 조사·검토하여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진로체험처 관련 문의

질의

진로체험처의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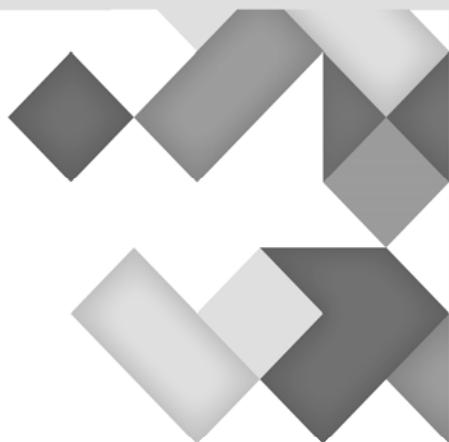
회 신

2017-04-01(행복한교육) [진로교육정책과]

진로체험처는 현장직업체험형, 직업실무체험형,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진로 캠프형 등의 참여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꿈길 사이트(www.ggoomgil.go.kr) 접속 후 체험처 등록→진로체험지원단(센터)에서 체험처 승인→체험프로그램 등록→체험프로그램의 과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

지방교육



■ 교육재정

1 학교설립에 관한 중앙투자심사 승인 요청

질의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9,600세대가 2018년 1월에 입주예정이나 기존
○○초등학교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신설 개교 예정입니다만, 중학교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학업을 위해 중학교가 단지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6-11-28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의 설립, 폐지 및 이전 등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 계획은 교육감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교육감이 수립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및 교육분야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전체 개발사업의 규모와 유발
학생수, 분양공고 규모, 해당 학교 설립 지역뿐만 아니라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등의 입주시기, 개교예정 시기의 학생 수 및 인근학교 학생수용 여력 등 전반적인
학교설립 여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12월 중순경 예정인 수시2차 중앙투자심사에 ○○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지원하겠습니다.

2

학교용지 및 학교 시설 기부채납 시 부담금 면제 가능 여부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교육청 의견으로 학교시설을 추가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기존 초등학교 용지(10,000㎡)에 추가확장(3,500㎡)하여 기부채납 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경우 학교용지 기부채납(3,500㎡)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추가로 학교시설(교사동 2개층 증축)이 필요하다 하여 2개층을 증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증축 후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회신

2016-11-3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거나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학교용지법 용어 해석 질의

질의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300가구”에서 가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2. 1,600실 규모로 대학교가 소유권을 갖고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를 건축할 때도 학교용지 확보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상 “300가구” 이상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회 신

2017-02-0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1. ‘가구’란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거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2.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를 건축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입니다.

*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또한「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30㎡인 경우에 한함)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1~2인 가구의 거주를 위한 주택으로 취학수요를 유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1)

질 의

질의 1-1 : 제5조1항에 따른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상기 목적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요?

질의 1-2 :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는 바 관광문화시설(숙박업, 야영장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질의 1-3 :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은 동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혹은 10년 이상 유지 등의 별도 조건없이 위 사항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요?

질의 1-4 : 용도 및 기간을 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등기부분에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5 : 예들 들어 A라는 폐교를 마을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이 매입하였다고 가정합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마을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였고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후 폐교 A는 일반인에게 제한없이 매각 가능한가요? 2. 폐교재산의 매각 시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특별법 및 공유재산법과 관련한 예외조항의 경우 수의계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 신

2017-03-2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답변 1-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말하므로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1-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호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시설을 말하며 숙박업과 야영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1-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란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을 정의하므로

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폐교활용법 상의 지역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 1-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의해 용도를 지정한 매각의 경우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 1-5 : 용도와 기간을 정하여 매각한 후, 그 용도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재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용도와 기간 및 계약방법은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대부분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2)

질의

질의 2-1 : 예를 들어 관할 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하고자 한다면 용도, 사용기간, 지역주민입찰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다수를 대상으로 일반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인지요?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 2-2 :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폐지학교와 폐지되었으나 미활용 중인 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정보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지역주민 아님)이란 사람이 폐지되었으나 미활용학교 A(지역주민 매입의사 없음, 관계기관 이전없음)에 대해 개인용도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원할 때 사용용도 등 제한없이 매입가능 대상이 되는지요?

회신

2017-03-22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답변 2-1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인지 경쟁 입찰로 매각을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해당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2-2 : 미활용폐교라 할지라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1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 해당되지 않거나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용도가 아니라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 제1조(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교육용 시설 해당 여부

질 의

폐교 통학구역 내에 지역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시설로 폐교를 대부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로 대부할 경우 수의계약 및 대부로 감액이 되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교육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부 활용하려는 시설 : 폐교건물을 농어촌체험장(농업체험시설, 어업체험시설 등)으로 조성하여 자연학습시설로 제공하고, 운동장 등은 자연 학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캠핑장으로 사용

회 신

2017-05-12 08:48:15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민원인께서 대부 활용하려는 시설(농어촌 체험장)이 농업체험시설, 어업체험시설 등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면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캠핑장 또한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이라면 마찬가지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등을 분양한 때 분양자료를 제출,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바,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중 일부 세대를 분양하지 않고 회사보유분으로 남겨 둘 경우

-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지?
- 분양계약과 관계없이 회사보유분도 준공 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 부과대상이라고 한다면 부과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회신

2017-06-0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개발사업자에게 분양자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분양자료를 받은 즉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또는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분양 여부 및 분양시기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가 결정된다 할 것이며, 취학 수요의 유발은 분양된 공동주택에서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대상 관련

질의

지방재정교부금법 11조제8항, 제9항과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보조하는 경우, 국립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2017-09-21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같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보조금 집행 방법에 공립 및 사립학교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규정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는 공립 및 사립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립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교육자치

9 교원과 행정직원 관련

질의

초·중학교 교원이 행정직원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7-04-13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원은 ‘행정직원 등 직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10 시보임용의 기간 단축 해당 여부

질의

[사례] 2016.7.11.~2016.11.11. (지방사회복지서기보), 2017.9.1.~(지방교육행정서기보시보임용) 위 대상자의 경우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근무경력 4개월이 지방교육행정서기보 시보임용 후 시보임용 단축기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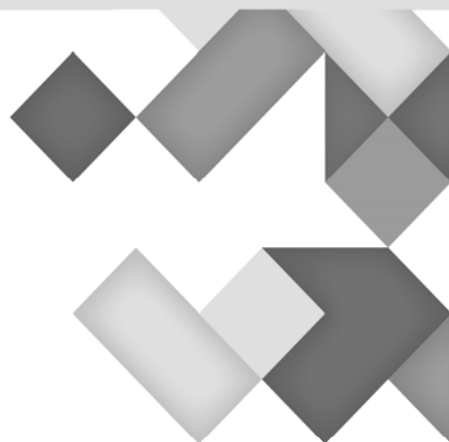
회신

2017-09-20 [지방교육지원국 지방교육자치과]

시보시간의 단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귀하께서 근무한 경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VII

기타



1

나이스 개인번호 변경으로 연수 결과 재전송 요청

질 의

동일 아이디로 과거 이수했던 연수 모두 이관 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나이스 개인번호가 바뀌었는데 수정을 하지 않아 나이스로 전송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이관 부탁드립니다.

회 신

2017-06-27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

귀하의 요청하신 내용대로 2017년 원격연수 이수 내용 5건 전부를 재전송 완료해 드렸습니다. 나이스 등재 여부는 해당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확인 가능합니다.

2

호봉획정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여부

질 의

우리 대학교에서 항공주사보(7급) 임용을 하였습니다. 임용된 공무원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봉획정을 하려고 확인하니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기준표에는 '항공무선통신사'라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으로 근무한 민간경력을 7급경력으로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7-08-02 [운영지원과]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하여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임용 전 민간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명단, 주소록 요청****질 의**

2016년도 현재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대학교 리스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학교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담고 있는 전국 교육기관 리스트 (현황자료)가 필요합니다.

회 신

2017-01-03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의 [자료실]을 통해 2016.4.1. 기준 유·초·중·고등교육기관 명단 및 주소록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알리미 홈페이지(www.academyinfo.go.kr)-게시판-자료실-게시번호 73082번”을 통해서도 목록과 주소,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관련

질의

대부분의 정부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하는데, 교육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라는 특별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시고 그에 관한 자료나 출판물 등이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신

2017-01-19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교육은 전 국민의 중요한 관심사이자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분야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교육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의 진흥, 학교 교육에의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특정 사안 및 정보에 대해 공개 청구 시 관련법 조항에 의거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반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항목을 지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공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급당 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 개별학교의 유용한 정보를 공개하여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초·중등학교는 ‘학교알리미’, 대학은 ‘대학알리미’를 검색하시면 학교 및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해당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운영 관련

질의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3-30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통계담당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http://www.academyinfo.go.kr>)에서는 대학알리미 이용자 안내 및 운영상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자의견접수” 및 “오류정보신고센터”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알리미 홈페이지는 운영에 필요한 수요자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 운영 및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대학알리미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 질의 시 비공개도 가능하나 메일(open@kcue.or.kr)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유학생 거주 형태 통계 요청

질의

현재 유학생들의 수나 지역별 분포 같은 것은 대학알리미 및 행안부 통계로 알 수 있었습디만, 유학생들의 거주 형태(예) 기숙사, 원룸, 고시원, 하숙 등)를 알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통계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부서에서 갖고 계신다면 공개 요청드립니다

회 신

2016-12-05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유학생 거주 형태별 통계자료는 우리 부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여부에 관한 통계자료는 매년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를 통해 조사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 → 정부3.0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유학 및 교원정보, 외국 학력인정 학교 정보(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7

국제어학원 수업 운영 관련

질 의

먼저 대학교 부설 국제어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제어학원 어학과정 수업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절차를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설 국제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어학과정 수업을 일반적으로는 주 중에 진행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회 신

2016-12-21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국제어학원은 대학에 설치된 부설기관으로 대학 총·학장의 권한 및 학칙 등 대학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합니다. 대학 부설기관의 운영내용은 대학 자체의 권한이므로 대학별로 그 운영방법 및 내용이 다릅니다. 대학의 자체 내부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질의

4년제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교육부에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인가요? 대학교에서 시설이나 인원 등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대학교에서 진행해야 할 준비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2017-01-10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대학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교육시설, 인력 등의 사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별도의 시설, 인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부에 등록 또는 인가 사항도 아닙니다. 외국인 유학생 입학 및 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교육부 인가 외국교육기관 목록

질의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의 목록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1-13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립 승인되며,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 목록은 정보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제주국제학교 교육과정 관련

질 의

제주국제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4-06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제주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교육과정과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228조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28조(국제학교의 운영 등) ① 국제학교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게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타 제주국제학교에 관한 사항은 정보안내 홈페이지(www.isi.go.kr)를 참고 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간행도서 지원 요청

질 의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발행한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가 필요한 자료인데 영주에서는 이용할 도서관이 없습니다. 위의 자료를 무상지원이나 판매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회 신

2016-12-04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발간도서의 배본은 공공기관, 대학도서관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에게는 배본, 혹은 판매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서는 발간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현재 재고가 모두 소진된 상태라 여타의 공공기관에 새로 배본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선생님처럼 인쇄자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에 간행자료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행자료의 원본 책자는 (<http://library.history.go.kr>)에서 모두 보실 수 있으며,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아래에 인터넷 제공 주소를 링크해드리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library.history.go.kr/search/Collection.ax?id=54>

12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 요청

질 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현상금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신

2016-12-15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김원봉의 현상금 관련 내용은 최근 영화를 비롯한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원봉의 현상금 관련 자료는 없으며 다만 독립운동가의 회고나 혹은 김원봉을 상대하는 밀정들의 착수금을 현상금과 등치시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김원봉의 현상금과 관련된 자료는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논평할 수 없습니다. 김원봉 관련 대표적인 저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염인호, 『김원봉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3이원규, 『(약산) 김원봉』, 실천문화사, 2005한상도, 『대륙에 남긴 꿈: 김원봉의 항일역정과 삶』, 역사공간, 2006김삼웅, 『약산 김원봉 평전』, 시대의 창, 2008염인호, 「김원봉」 『한국사시민강좌』 47, 일조각, 2010

13

조선시대 호포제 및 고려시대 한외과 제도 관련

질의

1. 호포제는 반상의 구별없이 군포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비들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당시 양반들이 상민들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노비 이름으로 납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노비들이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2. 전시과제도에서 한외과가 개정전시과 때부터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찾아보니깐 시정 전시과 때는 15결, 개정 전시과 때는 17결, 경정 전시과 때는 폐지된 것으로 알게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7-01-26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조선시대 노비들의 호포제 적용에 관한 답변입니다. 1. 조선시대 노비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대상이 아니므로(김성우, 『조선시대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25쪽), 양반에게도 군역을 부여하여 세입의 증가를 도모하였던 호포제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대원군은 이 제도가 자칫 평민들이 양반을 앞잡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여 노비의 이름으로 포를 납부하게 하였습니다.(안외순, 「대원군의 경제정책」, 『동양고전연구』 8, 1997, 398~402쪽).

2. 고려시대 전시과에서 한외과로 분류되는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외과(限外科)와 관련한 내용은 『고려사』 권 78, 食貨志 1, 田制 田柴科條에 나타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신편) 한국사』에 따르면 한외과는 관계나 관직을 소유한 인물이 아닌 ‘이 해의 과등에 미치지 못하는 자(其未及此年科等者)’로 분류된 이들에게 전시과를 지급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정 전시과에서는 18과 이외의 인물들에게 田 15결이 지급되었습니다. 개정 전시과에서는 ‘과외(科外)에 해당하는 이들(不及 此限者)’에게 田 17결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정 전시과에 이르면 이전에 한외과로 분류되었을 만한 이들도 한내(限內)로 편입되어 제18과에 자리잡게 됩니다. 이때 제18과에게도 田 17결이 지급되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14, 1993, 37~58쪽).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해외 응시 요청

질의

최근 입사와 각종 국가 관련된 모든 시험들이 한국사능력평가 점수를 요구하는데 연 4회만 실시하는 관계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시기가 맞지 않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국어 능력평가는 현재 거주하는 영국에서 응시가 가능한데 왜 한국사시험은 응시할 수 없는지요? 오히려 한국사능력시험을 더 많이 요구하는

탓에 이것이 더 해외거주 학생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한국사능력시험을 유럽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회신

2017-03-09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단순히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목적인 외에 5급 공무원 채용, 국비유학생 선발, 교원 선발 등에 활용되는 등 자격시험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시험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격한 시험관리가 필요합니다. 문제유출 등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시험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현재 국내에서는 최대 200여 개 시험장에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만일 유럽지역에서 시험을 개최한다면 국내 시험장과 같은 시간에 시험이 치러져야 하는데, 이는 곧 새벽 1시에서 3시에 이르는 시간대에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 어려운 관계로 해외에서 시험을 개최하려면 동일한 난이도의 복수의 시험 세트를 만들어서 시차를 두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 또한 여건상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 시험장 이외에도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시험 개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럽 등 여타 지역에 있어서도 시차 문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요가 존재한다면 장기적으로 시험장 개설 지역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 관련

질의

얼마전 TV프로그램 ‘천사의 컬렉션’을 보고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시청 후 검색을 해보니 자료를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한다 되어 있던데 귀중한 자료이다 보니 열람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위해 인물카드 목록과 사진 이미지 및 인물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사진집이 있다거나 개인 저서나 논문 등에 수록된 것이 있나요? 구입이 가능할까요?

회신

2017-08-09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 기획협력실]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초기화면(시대별 일람)에서 ‘일제강점기’ 항목을 보시면 첫줄에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가 있습니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는 일제 경찰에서 감시 대상으로 삼은 인물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생일, 출생지, 주소지, 신장 등의 기본 정보와 아울러 각종 활동기록, 검거이력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 5,130건의 인물카드 중에는 한용운,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들의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제 감시대상 인물카드 데이터베이스는 이들 카드의 정보를 원 자료 그대로 전산화하여 구축되었습니다. 카드에 수록된 정보는 텍스트로 제작하여 검색·열람이 모두 가능하게 하였고, 카드마다 원본 이미지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원본 이미지 보기는 인물별로 들어가서 사진카드 위에 있는 ‘원본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6

중국정부초청 장학생 제출 서류 관련

질의

매년 2월 또는 3월에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선발이 있는데요. 2016년도 석사 과정 지원 자격을 봐보니 공통사항에 공인영어성적을 갖추자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자 우대라고 적혀 있는데요.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어학성적이 꼭 있어야만 하나요? 신 HSK5급 같은 경우 지원서 접수 당시에 합격증서가 없고 접수만 기입 후 합격증서를 받은 후 원본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회 신

2017-01-03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중국정부초청장학생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약에 의해 석·박사 과정의 장학생을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서 요구하는 기본요건에 충족하면서 국립국제교육원의 공개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공인영어성적은 국립국제교육원의 공개선발과정에 필수 항목입니다. 2017년도 중국정부초청장학생 요강은 아직 중국정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아직 오지 않아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7년도에도 영어공인성적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HSK 성적과 관련하여서는 지원당일 HSK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원당일 HSK 시험 성적을 인터넷으로 증명할 수 있고, 1차 합격자 서류 제출일까지 HSK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인터넷 성적조회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7

국비유학생 선발요건 문의

질 의

러시아 대학원 진학 예정으로, 2017년 국비유학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학대상국가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외국어 시험성적 기준표에 기재되어 있는 TORFL 1급은 보유하고 있으나, 영어 성적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러시아는 비영어권 국가이지만 대학원을 영어과정(영어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러시아 토르플(TORFL) 1급과 영어 성적 모두 보유해야 국비유학 신청조건이 충족되는

건지요? 혹은, 러시아 대학 영어과정지원의 경우 영어성적 없이 러시아어 성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국비유학 자격조건 등이 작년도 비교, 변경사항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회 신

2017-01-18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16년 공고 기준으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공고 : 유학국 공용어 중 아래 외국어 시험 성적 기준표에 제시된 언어) 유학국의 상용어를 제출하시게 되어 있으시고, 러시아로 유학을 가시고자 하시는 선생님의 경우 저희 공고 내에 있는 외국어성적기준표 내에 있는 TORFL, FLEX, SNULT 성적을 제출하시게 되시면 영어성적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응시가 얼마든지 가능 하십니다.

18**외국대학 석·박사 과정 장학금****질 의**

외국대학교 석사 및 박사과정 진학 시 장학금은 얼마나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 신

2017-04-05 [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중 '국비유학생' 사업과 '외국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이 질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비유학생' 사업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장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국비'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은 외국정부에서 우리나라 학생을 외국정부의 장학생으로 초청하는 사업입니다. 나라별로 선발하는 과정과 장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공지사항/외국정부초청장학생(선택)/‘희망하는 나라명’ 검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WEST 프로그램 선발 관련 문의

질의

WEST 프로그램 문의드립니다. 우리와 미국 간 2018년 10월까지 연장하는 데에 합의되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12개월 또는 18개월 WEST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내년 모집계획은 알 수 없을까요? 아니면 현재 모집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인 건가요?

회신

2017-07-10 [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WEST 프로그램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09년도부터 시행은 프로그램으로 한·미 정부 양해각서(MOU)에 따라 2018년 10월까지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후 프로그램 사업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 협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사업기간 연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2018년 선발은 진행됨) 아울러, 2018년 참가자 선발 인원 및 선발일정은 2018년 2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사업 연장 및 2018년도 선발 일정 등이 확정되면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선정 관련

질 의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을 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2017-02-21 [국립국제교육원 교육개발협력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행기관 신청 절차] 1) 전국 고등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시행기관 공모 신청 안내 공문 발송(시행기관 충원이 필요한 경우 시행) 2) 시행기관 유치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와 ‘시행기관 지정자체평가서’를 전자문서로 제출 3) 신규시행 희망기관 중 지역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서류검토를 통해 현장실사기관 선정 및 대상기관 통보 4) 현장실사기관에 대한 실사 평가 5)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기관 적합성을 판단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기관 최종 심사 및 확정 6) 시행지정기관에 확정 사실을 통보하고, 우리 원과 신규 시행기관 간 ‘위탁업무협약(시행기관 지정 대학 총장-국립국제교육원장)’을 서면 체결함 (위탁협약 체결 기간은 2년) 7) ‘시행기관 지정 확인서’ 송부

[국외 시행기관 신청 절차] 1) 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규시행 신청안내공문 발송(매년 하반기 시행) 2) 재외공관에서 관할 내 기관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신규 시행기관 신청 안내 및 신청 접수 3) 관할공관에서 신청기관을 실사평가 후 적격여부 판단 4) 관할공관에서 우리 원으로 신규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5) 신청서 및 실사 평가 서류 등을 검토 후 시행기관 확정 6) 우리 원에서 관할공관으로 신규시행기관 지정서 송부 7) 관할공관에서 해당기관으로 신규시행기관 지정 통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신규 시행기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시행기관] 전국의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의지 및 적극성이 있고,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의 일정 수준(400 ~ 1,500명) 수용이 가능하며 시설 · 인력충원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에 적합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

[국외 시행기관] 1) 한국어교육, 한국어보급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재외교육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및 단체 2) 정부기관, 대학(원) 또는 대학부설(부속기관)기관 등 현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관 및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21

징계 절차 관련

질의

저희 위원회에서 2017.00.00. 절차상 하자로 취소 결정된 2017-000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다시 징계를 진행함에 있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7-09-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하여 저희 위원회에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저희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징계처분 등의 절차 및 실체 하자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며, 청구인의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22

청탁금지법 상 스승의 날 허용 가능한 금품 등에 대한 질의

질의

김영란 법에 대하여 정확한 전달이 필요함. 어느 부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전달이 일선학교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어렵습니다.)

회신

2017-04-17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회신 사례>

(사례 17) 스승의 날 카네이션 꽃(2017. 1. 10.)

- 질의 :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답변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남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위 내용이 포함된 사례 등을 포함하여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를 이미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내 스승의 날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복지연수과에 동 사항을 안내하여 일선학교 선생님들께서 청탁금지법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안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없도록 교육부 홈페이지 국민참여·민원/청탁금지법 알아보기/자료실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 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와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와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와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 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에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 경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

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제3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부터 〈388〉까지 생략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2.12.] [행정자치부령 제63호, 2016.2.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같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만든 사람들

총	괄	감	사	관	김	청	현
		민원조사담당관			임	용	빈
기획 및 편집		사	무	관	전	건	우
		교	육	연	구	사	안
		주	무	관	이	재	성
		주	무	관	신	주	영
		주	무	관	김	빛	나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쇄일 : 2017년 12월

발행일 : 2017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감사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우 30119)

인쇄처 : 미래기획

전화 : 044-866-6331

본 책자는 PDF로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또한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
(☎ 02-6222-6060)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